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532호)	■ 최연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588호)
■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540호)	■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626호)
■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583호)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751호)
■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612호)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947호)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659호)	■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973호)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684호)	■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036호)
■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759호)	■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060호)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992호)	■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061호)
■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045호)	■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338호)
■ 조오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103호)	■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377호)
■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194호)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493호)
■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237호)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502호)
■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328호)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527호)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371호)	■ 홍정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595호)
■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428호)	■ 홍정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604호)
■ 강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536호)	■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627호)
■ 최연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558호)	■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828호)
■ 최연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561호)	■ 최연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890호)

2021.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신 항 진

목 차

I. 개 요	1
II. 주요내용별 검토	46
1. 급식최저단가를 반영한 아동급식 지원 (제10532호 김원이의원안)	46
2.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제10540호 이은주의원안)	51
3. 아동정책기본계획 보고대상으로 특별자치시장 추가 (제10583호 최형두의원안)	72
4.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으로 산후조리도우미 제공기관 추가 (제10659호 고민정의원안)	74
5.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 구성·운영(제10684호 김미애의원안) ..	81
6.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제10612호 강준현의원안, 제10992호 김예지의원안, 제11194호 안규백의원안, 제11328호 이재정의원안, 제12604호 홍정민의원안, 제12627호 신현영의원안)	87
7.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 상향 등 자립지원 강화 (제10992호 김예지의원안, 제11194호 안규백의원안, 제11237호 정춘숙의원안, 제12036호 강준현의원안, 제12595호 홍정민의원안) ...	96

8.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제10992호 김예지의원안, 제11194호 안규백의원안, 제11237호 정춘숙의원안, 제11588호 최연숙의원안, 제12061호 강선우의원안, 제12627호 신현영의원안)	109
9.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항목으로 ‘의료지원’ 또는 ‘심리상담’ 추가 (제11194호 안규백의원안, 제11328호 이재정의원안)	121
10. 보호종료아동 취업지원 강화 (제11328호 이재정의원안, 제12890호 최연숙의원안)	125
1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근거 마련 (제11237호 정춘숙의원안, 제12604호 홍정민의원안)	132
12. 아동학대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개선·보완 (제11626호 강선우의원안, 제11371호 한병도의원안, 제11588호 최연숙의원안)	140
13. 아동학대 언론보도기준 마련(제11045호 강선우의원안)	152
14. 아동학대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등(제11103호 조오섭의원안) ...	158
15.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추가(제11428호 김병욱의원안)	178
16.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등(제11536호 강민정의원안) ..	185
17. 자립지원기본계획 수립 등(제11558호 최연숙의원안)	192

18.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절차 강화 (제11561호 최연숙의원안)	203
19.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유형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등 추가(제11626호 강선우의원안)	208
20.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의무지정 등(제11751호 임호선의원안)	212
21.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인 범죄경력 조회 실시근거 마련(제11947호 서영석의원안)	217
22. 아동복지시설 평가근거 마련 등(제12060호 강선우의원안) ...	224
23.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 실시 (제12061호 강선우의원안)	232
24. 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 단축(제12338호 유의동의원안)	239
25.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처벌수준 상향 (제12377호 이원욱의원안)	242
26.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제12493호 김미애의원안)	244
27.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제12502호 고민정의원안)	248
28. 통합사례회의의 구성(제12527호 임호선의원안)	255
29. 아동권리보장원 고유업무 범위 확대(제12828호 김성주의원안)	261

I. 개요

1. 김원이의원안(2021.6.3. 발의, 의안번호 10532)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원이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1. 6. 3.

(3) 회 부 일 : 2021. 6.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에게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 금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고, 그 금액도 적어 아동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2. 이은주의원안(2021.6.3. 발의, 의안번호 10540)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은주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1. 6. 3.

(3) 회 부 일 : 2021. 6.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사후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 신고접수 횟수와 상관없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주기적인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현장조사, 응급보호, 아동학

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 등을 고려하여 설치·운영하며, 국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제1호, 제22조제3항제1호의2 및 제8항 신설, 제52조제1항제12호 신설, 제53조의2, 제59조제2항 신설).

3. 최형두의원안(2021.6.3. 발의, 의안번호 10583)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형두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1. 6. 3.
- (3) 회 부 일 : 2021. 6.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자치시장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아동·청소년 보호 및 복지 관련 법률인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기본법」, 「장애인아동복지법」,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특별자치시장에게도 정책 수립 및 실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동정책기본계획 보고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여 아동 복지 보장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4. 강준현의원안(2021.6.4. 발의, 의안번호 10612)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준현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1. 6. 4.

(3) 회 부 일 : 2021. 6.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한 청소년도 18세에 자립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에서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18세 청소년이 홀로 살아가기에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을 정보 부족으로 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관리·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들을 보다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여 자립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개인별 상담·지원·관리, 상담전화 설치·운영 등의 업무수행을 하게 하여 이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5. 고민정의원안(2021.6.7. 발의, 의안번호 10659)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고민정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1. 6. 7.
- (3) 회 부 일 : 2021. 6. 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학원 등의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신생아 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공분을 산 바 있음. 하지만, 현재 산후조리도우미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더라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있지 않음. 민간 타 업체에 비해 정부지원 산후조리도우미에 대한 서비스 수요자인 산모와 그 가족의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자격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하되 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26호 신설 및 제29조의4제1항제3호).

6. 김미애의원안(2021.6.8. 발의, 의안번호 10684)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1. 6. 8.
- (3) 회 부 일 : 2021. 6.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사망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대로 숨진 아동이 정부 통계의 최대 4.3배에 이를 수도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연구 결과로 인하여 아동의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사망 사건에 대한 심도깊은 조사와 그 결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미국의 경우 아동사망검토는 40년 이상에 걸쳐 제도화되어 왔는데, 1978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아동학대에 관한 기관 간 협의회」(I CAN, Interagency Council on Child Abuse and Neglect) 산하의 아동사망검토를 최초로 공식화한 이래, 현재는 50개 주에 걸쳐 1,350개 이상의 주정부 및 지역 아동사망검토팀이 존재함(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부적인 입법 형태는 주에 따라 다양함).

또한, 영국에서도 2008년부터 모든 거주 아동(0세~18세 미만)의 사망을 검토할 책임이 있는 ‘지역아동보호위원회(LSCB, 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의 후원하에 ‘아동사망개요패널(CDOP, Child Death Overview Panels)’ 개념이 법적으로 설립됐고, 현재는 「아동 및 사회사업법」(2017)에 따라 아동사망검토의 주체는 ‘아동사망검토파트너’로서 지방정부 혹은 지방정부 관할 임상위탁그룹으로 정의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사망 사건을 총체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4 신설).

7. 강선우의원안(2021.6.11. 발의, 의안번호 10759)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선우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1. 6. 11.

(3) 회 부 일 : 2021. 6.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현장조사 공공화 시행으로 정부는 전국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아동보호의 공공성 및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음.

아동학대대응체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 제도 운영 시, 시·군·구 단위까지 지역별 수요 및 아동학대 관련 정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관련 통계는 시·군·구 단위까지 입력·관리하고 있지 않아, 아동학대대응체계를 위한 통계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광역지자체 단위의 시스템을 기초지자체의 범위까지 세분화해, 실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연계와 아동학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시·군·구 단위까지 입력·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8. 강선우의원안(2021.6.23. 발의, 의안번호 11045)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선우의원 등 19인

(2) 제 안 일 : 2021. 6. 23.

(3) 회 부 일 : 2021. 6.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음.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불필요한 학대영상,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단정적 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드러나는 실정임.

2018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하여 공동으로 「아동학대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였음. 이 권고기준은 아동 인권의 최우선 고려,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보도,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기본원칙으로 함.

이에 국가가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8항 및 제6조의2 신설).

9. 김예지의원안(2021.6.23. 발의, 의안번호 10992)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6. 23.

(3) 회 부 일 : 2021. 6.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현행법에서 정한 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는 등의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은 미성년자인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을 자립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와 자립지원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19세로 상향하고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4항제2호의2, 제38조의2 신설).

10. 조오섭의원안(2021.6.25. 발의, 의안번호 11103)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조오섭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1. 6. 25.
- (3) 회 부 일 : 2021. 6.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하며 아동의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복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는 별도로 조사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의무화하며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정원, 배치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관할 구역의 아동 수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1조, 제13조, 제22조의6, 제45조).

11. 안규백의원안(2021.6.29. 발의, 의안번호 11194)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규백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1. 6. 29.

(3) 회 부 일 : 2021. 6.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과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와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조치에 의료 지원을 추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2호의2 신설, 제38조제1항제1호, 제39조의2 신설).

12. 정춘숙의원안(2021.6.30. 발의, 의안번호 11237)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춘숙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1. 6. 30.
- (3) 회 부 일 : 2021. 7.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복지시설에서 퇴소하도록 하고, 보호기간 연장 사유, 자립에 필요한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자인 18세에 보호대상아동을 자립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에 당사자인 지원대상아동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아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19세로 상향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아동을 대표하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13. 이재정의원안(2021.7.5. 발의, 의안번호 11328)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재정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7. 5.

(3) 회 부 일 : 2021. 7.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나 지원 없이 미성년자인 18세에 자립을 위하여 퇴소하게 되는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제39조의2 및 제41조의2 신설).

14. 한병도의원안(2021.7.6. 발의, 의안번호 11371)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1. 7. 6.
- (3) 회 부 일 : 2021. 7.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하고, 경찰,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 신고로 현장에 출동할 경우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지 못하는 등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찰관서의 장이 현장출동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을 거치지 않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현장 대처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 2).

15. 김병욱의원안(2021.7.9. 발의, 의안번호 11428)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병욱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7. 9.

(3) 회 부 일 : 2021. 7.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행법을 개정하면서 아동에 대한 상담·지도·양육·보호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에 중독된 자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명시하고 있어 아동에 대한 상담·보호·양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16. 강민정의원안(2021.7.16. 발의, 의안번호 11536)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민정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7. 16.

(3) 회 부 일 : 2021. 7.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는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다함께돌봄센터는 이러한 아동 돌봄을 위하여 마련된 시설로 만 6세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에게 균형 있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고,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하며,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하는 역할을 함.

그러나 교육부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20년 10월 기준 전국에 325개소(지원 대상 6,037명)에 불과하여 영유아 보육 지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임.

이에 부족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초등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확보하며, 아동이 거주 공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이는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기준을 고려한 것임.

17. 최연숙의원안(2021.7.19. 발의, 의안번호 11558)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연숙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1. 7. 19.
- (3) 회 부 일 : 2021. 7.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연장은 대학 진학과 직업 교육을 받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보호대상아동이 취업 준비 등으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있지만, 연장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2019년 기준 보호대상아동의 대학진학율은 37%, 취업율은 35.7%, 소득수준은 월 평균 123만원에 그치고 있고, 위탁보호 종료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임대주택이나 전세자금 지원 등 주거지원을 받는 비율도 32.2%에 불과해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종료 이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 아동이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아동

의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자립지원의 내용을 임대주택의 공급, 자립정착금 지원, 교육훈련 또는 교육비 지급,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제3호, 제37조의2 및 제38조).

18. 최연숙의원안(2021.7.19. 발의, 의안번호 11561)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연숙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1. 7. 19.

(3) 회 부 일 : 2021. 7.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로 인해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인도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보호자의 학대행위가 드러나기 쉽지 않아 보호자의 의견으로 가정으로 복귀시킬 경우 아동학대가 재차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이 6세 미만이거나 발달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19. 최연숙의원안(2021.7.19. 발의, 의안번호 11588)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연숙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1. 7. 19.
- (3) 회 부 일 : 2021. 7.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등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및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아동의 안전과 보호강화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3항제4호의2 및 제5호).

20. 강선우의원안(2021.7.21. 발의, 의안번호 11626)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선우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1. 7. 21.
- (3) 회 부 일 : 2021. 7.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육아와 양육이 서툰 부모와 자녀를 일상에서 지원하는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보호조치에 방과 후 돌봄서비스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7호 신설).

21. 임호선의원안(2021.7.26. 발의, 의안번호 11751)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호선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1. 7. 26.

(3) 회 부 일 : 2021. 7.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최근 전담의료기관 지정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그 수가 부족한 실정이며, 그로 인해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의료기관이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되도록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7제1항).

22. 서영석의원안(2021.8.6. 발의, 의안번호 11947)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1. 8. 6.

(3) 회 부 일 : 2021. 8.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채용 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결격사유를 조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채용 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사항에 한해 매년 조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경력조회가 최소한으로 한정되어 있어 종사자 채용 후 형이 확정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비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 3년에 1회 이상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아동돌봄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 신설).

23. 강선우의원안(2021.8.10. 발의, 의안번호 11973)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선우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1. 8. 10.

(3) 회 부 일 : 2021. 8.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창녕, 천안, 포항 등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함. 이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의 미비점을 파악하여 대응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생활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점검’이 이뤄진 바 있음. 그러나 해당 전수조사가 사건 이후 일회성 조사에 불과해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의무화하고,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관리 등이 거주 아동에 대한 보육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심리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24. 강준현의원안(2021.8.12. 발의, 의안번호 12036)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준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8. 12.

(3) 회 부 일 : 2021. 8.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정하고 있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해야 하는 연령이 너무 어리고, 이들이 자립 후에 보호자 없이 홀로 겪게 될 정서적 외로움 등을 고려할 때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24세로 상향 조정하고 자립 시 주거안정과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38조제2항 신설).

25. 강선우의원안(2021.8.13. 발의, 의안번호 12060)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선우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1. 8. 13.

(3) 회 부 일 : 2021. 8.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회적 인식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미비한 상황임.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 및 사업을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26. 강선우의원안(2021.8.13. 발의, 의안번호 12061)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선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8. 13.

(3) 회 부 일 : 2021. 8.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열여덟 어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하여 국가적 지원이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실제로 올해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은 일반청년보다 월임금은 적었고, 실업률은 높았으며, 대학진학률은 낮았음. 또한, 자살을 생각한 비율 역시 일반청년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음.

최근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 서고, 또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호아동의 충분한 준비를 위하여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연령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의3 신설).

27. 유의동의원안(2021.8.31. 발의, 의안번호 12338)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유의동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1. 8. 31.
- (3) 회 부 일 : 2021. 9.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포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조사 주기가 5년으로 너무 길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의적절한 아동복지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아동종합실태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28. 이원욱의원안(2021.9.2. 발의, 의안번호 12377)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원욱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1. 9. 2.
- (3) 회 부 일 : 2021. 9. 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은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므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중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에게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한 처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29. 김미애의원안(2021.9.9. 발의, 의안번호 12493)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1. 9. 9.
- (3) 회 부 일 : 2021. 9. 1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사망 사건, 상해사건, 가정폭력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해당 아동이 학생일 경우 교육기관에 대한 통보 의무가 없어 피해학생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이 발생함.

특히 지난 5월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 등 학대피해를 당한 청주 여중생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아동학대 사건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통보의무가 없어 해당 교육청은 학대 후 사망 전까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필요한 보호·지원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음.

이에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도 교육감 및 소속 학교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아동에 관한 통보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절하고 신속한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아동보호체계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30. 고민정의원안(2021.9.10. 발의, 의안번호 12502)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고민정의원 등 32인
- (2) 제 안 일 : 2021. 9. 10.
- (3) 회 부 일 : 2021. 9.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등이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아동 대상의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사실상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구별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학대상황에 대한 판단, 의사표현 및 신고가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교직원 등 학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닌 외부전문가가 실시하여 교육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대상이 영유아일 경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1조).

31. 임호선의원안(2021.9.13. 발의, 의안번호 12527)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임호선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1. 9. 13.
- (3) 회 부 일 : 2021. 9.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 지침」(2021.4.2)은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회의 구성·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통합사례회의는 올해 4월 이후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나,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통합사례회의의 운영 및 구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6 및 제71조제3항제2호의4 신설).

32. 홍정민의원안(2021.9.15. 발의, 의안번호 12595)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홍정민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1. 9. 15.
- (3) 회 부 일 : 2021. 9.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해야 하는 18세는 너무 어려서 자립하는데 어려운 현실이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시 전문적인 심리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에 대한 보호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심리검사를 할 때 경계선 지적 지능 관련 선별검사를 포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시 연령을 24세로 상향하는 등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33. 홍정민의원안(2021.9.16. 발의, 의안번호 12604)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홍정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9. 16.

(3) 회 부 일 : 2021. 9.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자립지원에 필요한 경제적지원이 부족하여 이들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자립에 필요한 자립수당을 지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아동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2항, 제3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9조의2 신설).

34. 신현영의원안(2021.9.17. 발의, 의안번호 12627)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현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9. 17.

(3) 회 부 일 : 2021. 9.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연장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특정 기관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들이 보호종료 이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신청하는 경우 6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3호 및 제39조의2 신설 등).

35. 김성주의원안(2021.10.12. 발의, 의안번호 12828)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성주의원 등 24인
- (2) 제 안 일 : 2021. 10. 12.
- (3) 회 부 일 : 2021. 10.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적 입양체계를 마련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27호) 및 「국제입양법안」(의안번호 제12826호)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바,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입양특례법」 및 「국제입양법」에 따른 입양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로 규정함(제10조의2제2항제9호).

36. 최연숙의원안(2021.10.20. 발의, 의안번호 12890)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연숙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1. 10. 20.
- (3) 회 부 일 : 2021. 10.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이나 자산의 형성 관리 지원 등의 자립지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기준 보호대상아동의 대학 진학률은 37%, 취업률은 35.7%에 그쳤으며, 소득수준은 월 평균 1백23만원에 불과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어, 일자리 안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이에 보호대상 아동이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하여 고용을 촉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자립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Ⅱ. 주요내용별 검토

1. 급식최저단가를 반영한 아동급식 지원

(제10532호 김원이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저소득 가정의 아동 등을 위한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② (생략) <u><신설></u>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내용, 제3항에 따른 급식최저단가의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 ----- -----

나. 보건복지부 의견

-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동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함.

다. 아동급식 지원사업 개요

- 각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호¹⁾를 근거로 아동급식 지원사업(지방이양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지원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의 아동,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등으로서, 해당 아동은 아동급식카드를 발급받아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유해품목 제외)할 수 있고, 도시락 배달·단체급식소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한편,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2021년 기준 급식지원단가는 1식에 6,000원임.

1)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동급식 지원사업 개요 >

- (추진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국가와 지자체에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사항 지원 의무 부과
- '05년 지방이양에 따라 지원기준·방법·절차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
 - * 보건복지부는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매뉴얼」을 통해 급식단가 등 권고
-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총 308천명('20년)
 - *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 급식대상자 현황(단위 : 명) >

연도	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18년	357,127	171,494(48.0%)	30,608(8.6%)	155,025(43.4%)
'19년	330,014	162,754(49.3%)	27,080(8.2%)	140,180(42.5%)
'20년	308,440	166,198(53.9%)	20,676(6.7%)	121,566(39.4%)

* 한부모, 긴급복지, 중위소득 52% 이하, 지역아동센터·복지관 이용 등

- (지원내용) '21년 기준 1식 6,000원 이상 지원 권장
- (시행주체) 교육청과 지자체 재원 분담·지원

구 분	학기 중				방학중, 연중
	평일		토·공휴일		
	조·석식	중식	조·석식	중식*	조·중·석식
기관명	지자체	교육청	지자체	교육청	지자체

* 학기 중 주말·공휴일 중식은 지자체에서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

** 아동이 원하는 급식지원 유형(조·중·석식)을 선택하나, 평균 1일 1~2식 제공

- (전달체계) 개인 신청, 지역사회 발굴·추천(읍면동, 시군구 등) → 대상자 접수·자격기준 조회 및 결정(시군구) → 지원방법에 따라 급식 전달

* 자료: 보건복지부

□ 급식지원단가와 지원대상은 각 지자체별로 교사, 사회복지사,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최근 3년간 시·도별 급식지원단가를 보면, 지자체별로 단가의 편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지원단가가 권장단가보다 낮은 지자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아동급식위원회 개요 >

- (설치) 시·군·구별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등을 위하여 설치
- (기능)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조사 및 결정,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명절 등 연휴 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시행, 급식단가 등 소요자원 조달 등
- (구성)
 - 위원장은 시·군·구청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자율적 선출
 - 위원은 아래 사람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① 관계 공무원(아동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등), ② 학부모 대표, ③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아동급식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지명
- (운영) 방학(여름·겨울방학 등) 기간 전 정례회의(연 2회 이상) 개최
 -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
- (전달체계) 개인 신청, 지역사회 발굴·추천(읍면동, 시군구 등) → 대상자 접수·자격기준 조회 및 결정(시군구) → 지원방법에 따라 급식 전달

* 자료: 보건복지부

< 최근 3년간 시·도별 급식지원 단가 >

시도명	2019년	2020년	2021년
서울	5,000~7,000	6,000~9,000	7,000~9,000
부산	4,000~5,500	5,000~6,000	5,500~8,000
대구	5,000	5,000	5,000
인천	4,500~6,000	5,000~6,000	5,000~6,000
광주	4,500	5,000	6,000
대전	6,000	6,000	6,000
울산	4,500	5,500	5,500
세종	5,000	5,000	5,000
경기	6,000	6,000	7,000
강원	5,000	5,000	5,000~6,000
충북	4,000~5,000	4,000~6,000	5,000~6,000
충남	5,000	5,000~6,000	5,000~8,000
전북	5,000	5,000	6,000
전남	4,500	4,500	5,000
경북	4,500~5,000	4,500~5,000	5,000
경남	4,500	4,500~6,000	6,000~7,000
제주	5,000	5,000	5,000

* 자료: 보건복지부

-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급식지원 시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아동은 육체적·정신적 성장기를 거치고 있어 급식지원에 있어서는 최적의 영양공급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급식비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 간 지원의 균형과 형평을 기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 다만, 급식지원단가는 지역별 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된 단가로서, 소요 재원을 부담하는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본다면, 개정취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급식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참고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권장지원단가 6,000원을 기준으로 이에 미치지 못한 각 지자체의 단가를 인상할 경우 소요 예상액은 연간 약 473억 2,200만원 정도로 추계됨.

(산출식) 6,000원 미만 지자체별(109개 시군구) 미달 금액* × 30일 × 12개월 × 1.5식 × 지원아동수**				
시·도	미달시·군·구	미달금액(원)	지원인원(명)	소요액(백만원)
계	109	500~1,000	97,575	47,372

* 2021년 7월 기준, 미달금액 = 6,000원 - 해당 지자체 지원단가
 ** 2021년 10월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약 97,575명

* 자료: 보건복지부

2.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제10540호 이은주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아동학대 신고접수 횟수와 상관없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함.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③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현장조사, 응급보호,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한 사상에 대해 불가피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 등을 고려하여 공동생활가정과 별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명시하며, 법인 또는 단체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함.

나. 보건복지부 의견

- ① ‘1년 내 2회 이상 신고’ 부분은 재학대 방지를 위한 요건으로서, 현재 즉각분리제도 도입 초기(3.30.~)인 점을 고려해 이행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② 재학대 우려 아동에 대해 지자체·경찰·아보전 합동점검(반기별, 대면)을 실시 중이며, 신고이력만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③ 면책규정은 아동학대 대응조치의 사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으로, 법체계적 정합성 측면을 고려하여 관련 사법절차를 다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한 개정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④ 다른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포함)과 차별화된 역할(피해아동 일시보호)과 기능을 명확히 정립한 후 설치·운영기준 등을 향후 구체화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 ⑤ 현행법으로도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아동 보호조치 등에 대해 국비 보조가 가능(아동복지법 제59조)하며, 아동학대 방지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 명시는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횟수와 상관없이 즉시분리 실시(안 제15조)

– 53 –

- 「아동복지법」의 개정²⁾으로 1년에 2차례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을 즉시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시분리 제도’가 도입되었음.
- 개정안은 즉시분리 요건인 신고횟수 조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 1년에 2차례 이상의 신고조건을 둔 것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분리조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피해정도나 사건빈도가 높은 신고사례는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 즉시분리 여부는 횟수 요건 등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판단재량(제15조제6항제4호)을 주어 상황의 위급성, 재학대 위험성 및 아동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1년 내 2차례 이상 신고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일시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2) 「아동복지법」(개정 2020. 12. 29.)

제15조(보호조치)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록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21.4월)을 배포하여 그 절차를 안내 중이라는 설명임.

(2) 아동학대 신고접수 이력이 있는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주기적인 양육환경 조사 실시(안 제2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② (생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생략) <u><신설></u> 2. 3. (생략)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기적인 양육환경 조사</u> 2. 3.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가정으로 복귀한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주기적으로 양육환경을 조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학대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대피해아동의 양육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해당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학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원가정 복귀 후 재학대로 인한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미 학대를 경험한 아동과 의사표현이 어려운 어린 아동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육상황 점검으로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재학대 예방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는 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판단됨.

- 특히, 주기적인 조사 실시로 공백 없는 보호·관찰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재학대 건수 >

(단위: 건)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재학대 건수	1,591	2,160	2,543	3,431	3,671

*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실제 아동학대 피해는 아동의 전 연령(18세 미만)에 걸쳐 발생하고 있고, 특히 재학대 발생의 비중이 7세 이상부터 15세 미만까지의 아동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주기적 조사 대상의 적정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 주기적인 조사로 인한 업무과중으로 아동보호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를 수행할 담당 공무원 및 지원인력 현황 등에 대한 점검 및 현장의 의견수렴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연도별 연령별 아동학대 발생 건수 >

(단위 :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1,715	18,700	22,367	24,604	30,045
0세	344	416	495	503	611
1세	312	493	551	524	690

2세	457	694	794	827	1,030
3세	543	792	830	936	1,264
4세	570	780	935	891	1,104
5세	485	841	960	864	1,194
6세	628	962	1,080	1,115	1,382
7세	696	1,088	1,186	1,427	1,705
8세	700	1,344	1,318	1,330	1,890
9세	727	1,163	1,438	1,552	2,006
10세	717	1,202	1,612	1,797	1,984
11세	859	1,303	1,452	1,807	2,194
12세	713	1,349	1,606	1,846	2,383
13세	827	1,370	1,719	1,913	2,221
14세	920	1,469	1,746	2,265	2,513
15세	853	1,367	1,666	1,894	2,340
16세	760	1,157	1,578	1,634	1,832
17세	604	910	1,401	1,479	1,702

* 자료: 보건복지부

< 재 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2019년 기준) >

(단위: 건, 명, %)

연령	건수(비율)	명수(비율)
1세 미만	30(0.9)	20(0.7)
1 ~ 3세	261(7.6)	183(6.6)
4 ~ 6세	387(11.3)	309(11.1)
7 ~ 9세	679(19.8)	535(19.3)
10 ~ 12세	839(24.5)	682(24.6)
13 ~ 15세	866(25.2)	724(26.1)
16 ~ 17세	369(10.8)	323(11.6)
계	3,341(100.0)	2,776(100.0)

* 자료: 보건복지부(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 아울러, 현행 법체계상 「아동복지법」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는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8조는 학대피해아동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으며, 제66조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아동의 주소·거소 방문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³⁾, 동 규정들에 개정 취지가 일부 반영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사후관리 개요 >

1. 사후관리 정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사후관리’란 사례종결 이후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 및 재학대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재학대 예방과 가족의 안정 유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및 가족에게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3) 「아동복지법」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3.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토대로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⑦ (생략)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제66조(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1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2. 사후관리 방법

가. 아동학대행위자와 동거하는 경우

- 사후관리 기간 : 최소 3개월 이상
- 사후관리 방법 : 사례종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피해아동을 직접 대면상담 피해아동의 안전여부, 재학대위험 상황 발생 여부 확인하여야 함
-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상태 및 변화 확인
- 가정상황의 변화 확인
- 학대 혹은 위기적 상황에 대한 예상 및 관찰

나. 아동학대행위자와 비동거하는 경우

- 사후관리 방법 : 사례종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화상담 등을 통해 피해아동의 안전여부, 재학대 위험상황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피해아동이 장기보호조치 된 경우 해당 시설, 위탁가정 등과 협의를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함

* 자료 : 「2019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p.112, 보건복지부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보호조치 후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과 반복적으로 112신고되거나 아동학대범죄 수사이력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지자체·경찰·아동권리보장원이 합동점검(반기별, 대면)을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임.

**(3)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형사책임 감경·면제
(안 제22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⑦ (생략) <u><신설></u>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⑦ (현행과 같음) ⑧ <u>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업무수행이 불가피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u>

□ 개정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현장조사, 응급보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⁴⁾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해당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상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면제 또는 완화함으로써,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소

4)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송 등의 부담 없이 아동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형사책임 면책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소방차·구급차·경찰차 출동⁵⁾ 또는 구조·구급⁶⁾의 경우 불가피성 등을 판단하여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응급의료법」은 선의의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고 있으며⁷⁾,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소방기본법」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

5)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4조(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을 한 자

7) 「응급의료법」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5조의2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방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형사책임 감경·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⁸⁾.

□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상의 경우⁹⁾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형법상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서 인정되어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며¹⁰⁾,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례 등을 고려한다면, 그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는 사법적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법체계적 정합성 측면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8)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방공무원이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9) 경과실의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하는 것은 아님.

10)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관한 면책사항을 규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한병도·이해식의원안)이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4)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 등을 고려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안 제52조 및 제53조의2)

현행	개정안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u><신설></u> ②·③ (생략)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u>쉼터</u> ②·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u>지정</u> 할 수 있다. <u><신설></u> <u><신설></u>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 <u>쉼터 설치·운영</u>)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 등을 고려하여----- ----- ----- <u>설치·운영</u>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피해아동 <u>쉼터의 설치·운영</u> 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u>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u>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학대피해아동쉼터11)(이하, ‘쉼터’라 함)는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11) 「아동복지법」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생활가정(아동복지시설) 중에서 지정하거나 공동생활가정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신규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¹²⁾, 2021. 5월 말 기준 전국에 76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

< 각 시·도 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현황 >

(단위:개소, 2021.5월 말 기준)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76	5	4	2	2	2	4	2	1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	5	7	6	3	9	5	3	3

* 자료: 보건복지부

- 학대행위자 등과의 차단을 위해 주로 일반 다세대주택 등을 활용하여 비공개로 운영하며, 숙식뿐만 아니라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등을 제공함. 종사자로는 원장 1명, 보육사 3명,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을 두며, 1개소 당 정원은 평균 5~7명임.
- 시장·군수·구청장은 심각한 아동학대가 발견되면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신속하고 긴밀하게 임시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쉼터 등 임시보호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아동 배치의 어려움이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매년 아동학대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분리보호가 필요한

12) 남녀 혼성시설 설치는 불가하며 남아전용 또는 여아전용으로 설치하여 적절한 보호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아동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에 설치된 76개소 쉼터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은 연 최대 500여명(쉼터당 정원 약 7명)에 불과하고, 그 밖에 보호치료시설(12개소)이나 일시보호시설(13개소)도 충분치 못한 상황임.

특히, 「아동복지법」 개정¹³⁾으로 1년에 2차례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가정에서 아동을 분리하는 ‘즉시분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와 같은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건수, 판단 사례 및 분리조치 아동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신고건수	19,214	29,674	34,169	36,417	38,380	38,929
아동학대 판단	11,715	18,700	22,367	24,604	30,045	30,905
분리조치	2,772	3,730	3,527	3,287	3,669	3,926

* 자료 : 보건복지부

13)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보호치료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현황(2019년 말 기준) >

(단위: 개소, 명)

구분	보호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	
	시설	인원	시설	인원
계	12	469	13	275

*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쉼터를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 등을 고려하여 공동생활가정과는 별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아동복지시설로 명시하며, 법인 또는 단체로의 위탁 근거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쉼터의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아동학대 사례 증가 대비 쉼터 증가세는 다소 주춤한 상황이고¹⁴⁾, 인구대비 지역별 설치·운영 편차가 존재하며, 특히 연령·장애여부 등 입소자 특성을 고려한 쉼터는 부재한 상황으로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쉼터 설치·운영을 통해 쉼터의 안정적·균형적 증가세를 유도하고, 피해아동을 위한 쉼터의 다양한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 아동인구별·성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현황 >

구분/광역시도		개소수	시설유형
시도	아동인구 수	총 76개소	-
서울	1,211,118	5	남아전용 2, 여아전용 3
부산	438,865	4	남아전용 2, 여아전용 2
대구	348,399	2	남아전용 1, 여아전용 1
인천	439,488	2	남아전용 1, 여아전용 1
광주	238,719	2	남아전용 1, 여아전용 1
대전	225,306	4	남아전용 2, 여아전용 2
울산	184,627	2	남아전용 1, 여아전용 1

14) '15년 46개소→'16년 53개소→'17년 57개소→'18년 65개소→'19년 73개소→'20년 76개소

세종	83,935	1	남아전용 1
경기	2,181,577	13	남아전용 4, 여아전용 8, 공용 1
강원	209,806	5	남아전용 2, 여아전용 3
충북	237,696	7	남아전용 2, 여아전용 5
충남	329,823	6	남아전용 3, 여아전용 3
전북	260,626	3	남아전용 2, 여아전용 1
전남	259,041	9	남아전용 3, 여아전용 6
경북	362,119	5	남아전용 3, 여아전용 2
경남	518,563	3	남아전용 1, 여아전용 2
제주	116,037	3	남아전용 1, 여아전용 2

*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쉼터는 현행 법령상으로도 장기보호시설인 공동생활가정¹⁵⁾의 한 유형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볼 수 있고,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인력 기준을 따르도록 한 쉼터의 전반적인 설치기준에 대한 재정비 논의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개정안은 쉼터운영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쉼터운영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지나,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체계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쉼터확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쉼터 신설(기존 대비 15개소 확대)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수요를 반영하여 연내 29개소(2021.5월 기준)를 추가 지원하며¹⁶⁾, 향후 아동학대 건수, 지역별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설명임.

15)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6)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2021.1.19.)

(5) 아동학대 사업 비용지원 근거 마련(안 제59조)

현행	개정안
제59조(비용 보조) (생략) <u><신설></u>	제59조(비용 보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꾸준하고도 안정된 예산지원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고,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아동학대 사례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예산 소요가 예상되어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한 사업들이나, 이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를 별도로 둠으로써¹⁷⁾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로 보임.
- 참고로, 2021년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비 재원은 일반회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 관리)과 복권기금(기획재정부 관리)으로 나뉘는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287억 3,600만원, 복권기금이 108억 1,500만원이, 일반회계로는 42억원 1,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17) 현행 해당 조문에 비용 지원과 관련한 일반규정이 이미 존재함(아동복지법 제59조)

< 아동학대 관련 예산 자원 >

(단위: 백만원)

재 원	내 용	2021 예산
	총계	43,76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법무부 소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24,532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3,000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	1,204
복권기금 (기획재정부 소관)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10,815
일반회계	-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	3,100
	- 조사공공화 상담조사시설지원	1,110

* 자료: 보건복지부

3. 아동정책기본계획 보고대상으로 특별자치시장 추가 (제10583호 최형두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라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는데, 현행은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략) 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u>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 ----- -----.

나. 보건복지부 의견

-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함.

다. 검토의견

- 개정안은 아동정책기본계획 통보 대상에서 누락된 시·도지사(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동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 정비 사항임.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¹⁸⁾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한 경우”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어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통보대상으로서 해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당 조문만으로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개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1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생략)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 ⑧ (생략)

4.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으로 산후조리도우미 제공기관 추가 (제10659호 고민정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동시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취업제한명령의 대상기관으로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 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 ----- ----- ----- ----- ----- ----- ----- ----- ----- ----- ----- ----- ----- -----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5. (생략) <신설> ② ~ ⑦ (생략)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 제1호·제7호·제9호·제10호·제11호·제23호·제25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4. ~ 6. (생략) ②·③ (생략)	-----. ----- ----- -----. 1. ~ 25. (현행과 같음) 26.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 이 경우 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①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 ----- 제25호·제26호에----- --- 4.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나. 보건복지부 의견

-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을 취업제한명령의 대상기관으로 추가하여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함.

다. 검토의견

-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면서,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장원,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허가·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사업’을 실시 중임. 산후조리도우미는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에 채용되어 소정의 교육을 수료 후 각 출산가정에 파견지원되고 있음.

<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사업 개요 >

□ 개요

- (사업목적)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 (예산) '21년 113,442백만원(국비), 지자체 보조율(50/70/80%)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 * '21년 4인가구 기준 월소득 5,852천원 이하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제공자 등록 기관('20.12기준 1,054개소)
- (제공인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과정*이수자('20년 10,981명)
 - * 신규자 60시간(이론28, 실기32), 경력자 40시간(이론15, 실기35), 보수교육 8시간

□ 서비스 신청 및 내용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복지로(www.bokjiro.go.kr)
- (지원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

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25일

- 쌍태아 제공인력 1 또는 2명 선택, 삼태아 이상은 2명 지원

○ (서비스 내용)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감염 예방 및 관리 등),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 (서비스 가격)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서비스기간에 따라 592~5,920원(정부
지원금 368~4,832천원)

* 자료 :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발생사례 증가를 계기로 아동돌봄을 수행하는 인력의 검증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산후조리도우미는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적 돌봄을 수행하는 인력임에도 이들을 채용·제공하는 기관은 현재까지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자의 취업제한명령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고 있었음.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의 경우 종사자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범죄경력 자료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취득·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임.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에 개정안은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서 열거하는 취업 제한 아동관련기관으로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는 등의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타당한 입법취지로 판단됨.

5.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 구성·운영(제10684호 김미애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사망 사건을 총체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7조의4(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사망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아동사망사건조사상설기구(이하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사망의 원인 조사 2. 조사 결과 분석 3.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보건복지부 의견

- 아동 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망사건을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성에 공감하나, 현재 특별법안 및 유사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으로, 진상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방식(제정법·기존법률 개정)등에 대한 논의와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검토 의견

- 전국의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5년 11,715건에서 2017년 22,367건, 2020년에는 30,90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천안과 창녕 등¹⁹⁾에서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음.

< 최근 6년 간 아동학대 관련 일반 통계 >

(단위: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
전체 신고건수	19,203	29,671	34,166	36,416	41,389	42,251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	16,651	25,878	30,923	33,532	38,380	38,929
최종 학대 판단건수	11,715	18,700	22,367	24,604	30,045	30,905
사망사건 발생건수	16	36	38	28	42	43

* 자료: 보건복지부(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19) “‘공포의 7시간’ 여행용 가방에 갇혔던 9살 초등생 끝내 사망” SBS 뉴스, 2020.6.4.

“온몸 멍, 머리 핏자국…부모 학대에 도망 창녕 9살 아동, 주민이 구조”, 한겨레, 2020.6.8.

□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사망사건도 2015년 16건에서 2020년 4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최근 발생한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²⁰⁾을 계기로 아동학대·재학대 근절을 위한 체계적 대책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²¹⁾.

□ 아동학대로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고, 이는 장기적인 트라우마도 경험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아동학대로 인한 가장 중대한 피해는 아동의 사망일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부족한 현실임.

20) 「경찰, ‘16개월 유아 사망’ 학대 의혹 조사…부모 소환」, 연합뉴스, 2020.10.20

21) 그간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여러 차례의 대책 마련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줄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18.3월)

- (발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신설 및 위기사동 안전 확인 정례화
- (보호)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대책단’ 설치, 공공 지원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신설(‘19.1월)
- (사후관리)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운영, 보호시설 퇴소 아동 주기적 모니터링

□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월) -아동학대 관련 내용-

- (대응체계) 학대조사 공공화로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 사례관리 기관으로 개편
- (전수조사) 만3세 전수조사 연 1회 실시(‘19~)
- (징계권) 민법 제915조에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용어 변경 또는 한계 설정

□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20.7월)

- ※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20.6월), 창녕 아동학대 사건(‘20.7) 계기 대책 마련
- (정보연계) 지역별 정보연계협의체 구성하여 학교 등 위기사동 정보 공유
- (대응체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 지자체 배치 ’22→ ’21년 단축
- (보호) 학대 발생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 (단계별 실효성) 대응인력 출입범위 확대, 사례관리 거부 시 제재규정 신설 등

□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20.10월)

- ※ 인천 미추홀구 방임 아동 화재사건(‘20.9월) 계기, 대책 보완 과제 마련
- (보완과제) 취약계층 아동 돌봄 공백 집중점검, 정서학대·방임 시 적극개입방안 마련
- ※ ’20.10월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후 ‘아동학대 대응업무 지침’ 개정
→ 적극적인 응급조치 시행으로 선제적 분리보호, 필수 대면조사 대상 확대, 영유아·장애아동 학대 신고 시 병·의원 필수 진료, 의료인 의견 우선 고려 등(‘20.’11)

-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부재하고²²⁾, 과거 민간 주도로 2014년 ‘이서현보고서’²³⁾를 작성한 사례는 있으나,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조사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며²⁴⁾, 아동학대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정작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는 부족한 상황인 것임.
- 이에 개정안은 아동학대사망사건의 분석을 위한 공적 조사체계인 상설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보호하지 못했던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을 확인·보완하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유형은 복잡적이고 다양²⁵⁾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규명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작동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에 대한 분석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마련된 보완책은 향후 유사사건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개정안의 입

22) 2020년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는 총 42명으로 확인되나 해당 통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이며, 수사기관을 통한 신고 및 진행사건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동 수치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아동학대 사망사례로 보기에 한계가 있음.

23) ‘울산 울주군 아동학대사망사건(13.10월)’ 후 2014년 민간기관(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등)이 국회(남인순 의원실)와 연계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 조사 단계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한 보고서

24) 2017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하였고(「아동복지법」 제65조의2), 이에 따라 2019년에 2018년 학대로 사망한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져 사례분석 및 통계에 기반한 조사는 실시중에 있으나, 개별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는 실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25) 가정폭력, 경제문제(무직, 빈곤, 감당 못할 부채), 범죄경력, 불안정한 혼인형태, 정신병력(우울증, 자해 및 자살시도, 알코올문제), 불우한 어린 시절(피학대경험, 가정폭력, 빈곤 등), 지지체계 부족 등(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췌)

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상설기구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의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등 인프라와 관련 부처 및 기관 간 상호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는데, 충분한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설계·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개정안과 유사취지로서, 대통령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심층분석을 실시하려는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690호)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을 조사하려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신현영의원·강선우의원 대표발의)이 각각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붙임참고), 이와 함께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²⁶⁾.

26)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19.)'을 통하여, 중대 사망사건 대응과정 검토 및 제도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사망사건분석팀'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설치하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음.

※ 붙임: 조사위원회·기구 운영 관련 발의안 별 비교

구분	김상희의원안 (제정안)	신현영의원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21.2.9. 발의)	강선우의원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21.2.10. 발의)	김미애의원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21.6.8. 발의)
업무	진상조사, 국가기관 대응 적정성 점검, 개선방안 마련	사건 조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	사건 조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	사건 조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
업무주체	대통령 소속 진상조사위원회	복지부 소속 아동사망사건 조사위원회	복지부 소속 중대아동학대사건 조사위원회*	복지부 소속 아동사망조사 상설기구
구성	대통령이 임명 (7인)	시행령에 위임	10명 이내 (변호사, 의료인, 아동복지 전문가 등)	시행령에 위임
임기	활동기간 종료시까지		시행령에 위임	
조사기간	조사개시결정 후 2년		자료요구권한 및 제출의무 부여	협조요청권한 부여
특이사항	자료요구권한 및 제출의무 부여		시행령에 위임	시행령에 위임
사무국/처	사무국장 1명 및 그 밖의 필요직원			
운영규모	-			
운영기간	위원회 종료 후 3개월까지 존속			
결과보고	조사종료 후 6개월 내에 국회·대통령 보고			
국기기관 대상 권고 이행	이행상황 6개월마다 국회 보고**			

6.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제10612호 강준현의원안, 제10992호 김예지의의원안,
제11194호 안규백의원안, 제11328호 이재정의의원안,
제12604호 홍정민의의원안, 제12627호 신현영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발의된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강준현·김예지·이재정의의원안은 이를 강
 행규정으로, 안규백·홍정민의의원안은 재량규정으로 각각 두려는 것임.

현 행	강준현 의원안	김예지 의원안	안규백 의원안	이재정 의원안	홍정민 의원안	신현영 의원안
제 38 조 (자 립 지 원) ① 국 가 와 지방자치 단 체 는 <u>보호대상</u> <u>아 동 의</u> <u>위탁보호</u> <u>종료 또</u> <u>는 아동</u> <u>복지시설</u> <u>퇴소 이</u> <u>후의 자</u> <u>립을 지</u> <u>원 하 기</u> <u>위 하 여</u>						제 38 조 (자 립 지원) ① ----- ----- ----- ----- - 위 탁 보 호 가 종 료 되 거나 아동 복 지 시 설 을 퇴 소 한 보 호 대 상 아 동 (이하 “자립 준 비 아 동 ” 이라 한다) 의----- -----

다음 각 호에 해 당 하 는 조 치 를 시행하여 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 과 같음)
<신설>	제39조의2	제38조의2	제39조의2	제39조의2	제39조의2	제39조의2
	(자립지 원전담기 관) ① 국 가 와 지방자치 단 체 는 보호대상 아 동 의 위탁보호 종료 또 는 아동 복지시설 폐소 이 후의 자 립을 지 원 하 기 전담기관 위 하 여 전담기관 (이 하 “자립지 원전담기	(자립지 원전담기 관) ① 지방자치 단 체 는 보호대상 아 동 의 위탁보호 종료 또 는 아동 복지시설 폐소 이 후의 자 립을 지 원 하 는 전담기관 (이 하 “자립지 원전담기 관 ” 이 라 한 다) 을	(자립지 원전담기 관) ① 국 가 와 지방자치 단 체 는 보호대상 아 동 의 위탁보호 종료 또 는 아동 복지시설 폐소 이 후의 자 립을 지 원 하 기 위 하 여 자립지원 전담기관 을 설치 · 운영할	(자립지 원전담기 관) ① 지방자치 단 체 는 보호대상 아 동 의 위탁보호 종료 또 는 아동 복지시설 폐소 이 후의 자 립을 지 원 하 기 위 하 여 시·도 및 시·군·구 에 자립 지원전담 기 관 을	(자립지 원전담기 관) ① 국 가 와 지방자치 단 체 는 보호대상 아 동 의 위탁보호 종료 또 는 아동 복지시설 폐소 이 후의 자 립을 지 원 하 기 위 하 여 자립지원 전담기관 을 설치 · 운영할	(자립지 원전담기 관의 설 치 등) ① 국가 와 지방 자치단체 는 자립 준비아동 의 자립 을 지원 하기 위 하여 자 립지원전 담기관을 설치·운 영하여야 한다.

	관"이라 한다)을 설치·운 영하여야 한다.	시·도에 1개소 이 상 설치 · 운영하 여야 한 다.	수 있다.	설치·운 영하여야 한다.	수 있다.	
	② 자립 지원전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 행한다.	② 국가 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자립 지원전담 기관의 설치·운 영에 필 요한 비 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와 지방 자치단체 는 자립 지원전담 기관의 설치·운 영을 보 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 는 단체 에 위탁 할 수 있 다.	② 제1항 에 따른 자립지원 전담기관 의 설치기 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 격과 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와 지방 자치단체 는 자립 지원전담 기관의 설치·운 영을 보 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 는 단체 에 위탁 할 수 있 다.	② 제1항 에 따른 자립지원 전담기관 에는 자 립준비아 동의 자 립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립지원 전담요원 을 둘 수 있다.
	1. 제38조 에 따 른 자 립지원 관련 정보 제공 및 개 인 별 상담· 지원· 관리					
	2. 상담전 화 설 치·운 영					
	3. 그 밖 에 대통 령령으 로 정하 는 자립					

	<u>지원 관</u> <u>련 업무</u> ③ <u>국가</u> <u>와 지방</u> <u>자치단체</u> <u>는 자립</u> <u>지원전담</u> <u>기관</u>의 <u>설치·운</u> <u>영을 보</u> <u>건복지부</u> <u>장관</u>이 <u>정하는</u> <u>법인</u> 또 <u>는 단체</u> <u>에 위탁</u> <u>할 수 있</u> <u>다.</u> ④ <u>자립지</u> <u>원전담기</u> <u>관의 설</u> <u>치기준과</u> <u>운영, 상</u> <u>담원 등</u> <u>직원</u>의 <u>자격과</u> <u>배치기준,</u> <u>상담전화</u> <u>설치·운</u> <u>영 등에</u> <u>필요한</u> <u>사항</u>은 <u>대통령령</u> <u>으로 정</u>	③ <u>지방</u> <u>자치단체</u> <u>는 자립</u> <u>지원</u>을 <u>목적</u>으로 <u>하는 비</u> <u>영리법인</u> <u>을 지정</u> <u>하여 자</u> <u>립지원전</u> <u>담기관</u>의 <u>운영</u>을 <u>위탁</u>할 <u>수 있다.</u> ④ <u>자립지</u> <u>원전담기</u> <u>관의 설</u> <u>치기준과</u> <u>운영, 상</u> <u>담원 등</u> <u>직원</u>의 <u>자격과</u> <u>배치기</u> <u>준, 제3항</u> <u>에 따른</u> <u>지정의 요</u> <u>건 등에</u> <u>필요한 사</u> <u>항</u>은 <u>대통</u> <u>령령</u>으로 <u>정한다.</u>	③ <u>자립</u> <u>지원전담</u> <u>기관</u>의 <u>설치 기</u> <u>준과 운</u> <u>영 등에</u> <u>필요한</u> <u>사항</u>은 <u>대통령령</u> <u>으로 정</u> <u>한다.</u>	③ <u>제1항</u> <u>에 따른</u> <u>자립지원</u> <u>전담기관</u> <u>의 설치</u> <u>기준과</u> <u>운영, 제</u> <u>2항에 따</u> <u>른 자립</u> <u>지원전담</u> <u>요원</u>의 <u>자격, 배</u> <u>치 기준</u> <u>및 교육·</u> <u>훈련 등</u> <u>에 필요</u> <u>한 사항</u> <u>은 대통</u> <u>령령</u>으로 <u>정한다.</u>
--	---	--	--	---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u>한다.</u>					제 59 조 (비 용 보조) ----- ----- -----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 음)
6. 제38 조에 따 른 <u>보호 대상아동</u> 의 자립 지 원 에 필 요 한 비용						6. ----- ----- <u>자립</u> <u>준비아동</u> ----- ----- -----
7. · 8. (생 략)						7. · 8. (현 행과 같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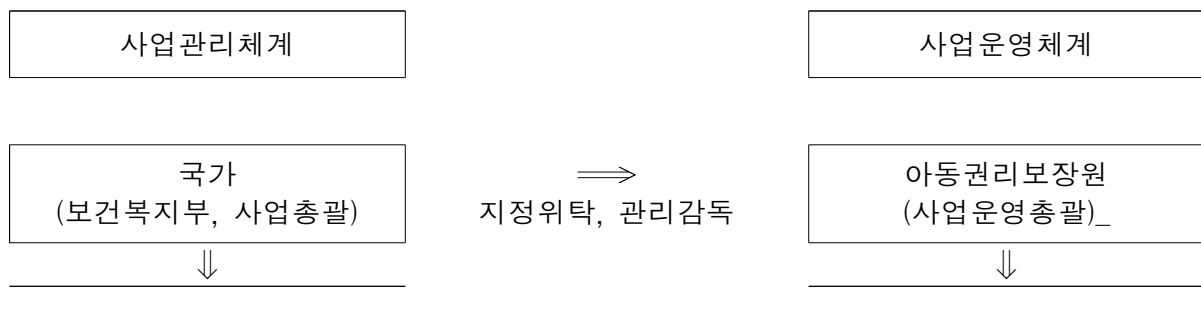
나. 정부부처 의견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을 통해 전국적인 자립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편차 없는 자립지원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 규정 마련 필요성에 공감함. 이와 연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하는 방안²⁷⁾ 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에 대한 지역별 형평성 및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인력채용, 보호대상아동 현황 등에 대한 자치단체와의 의견수렴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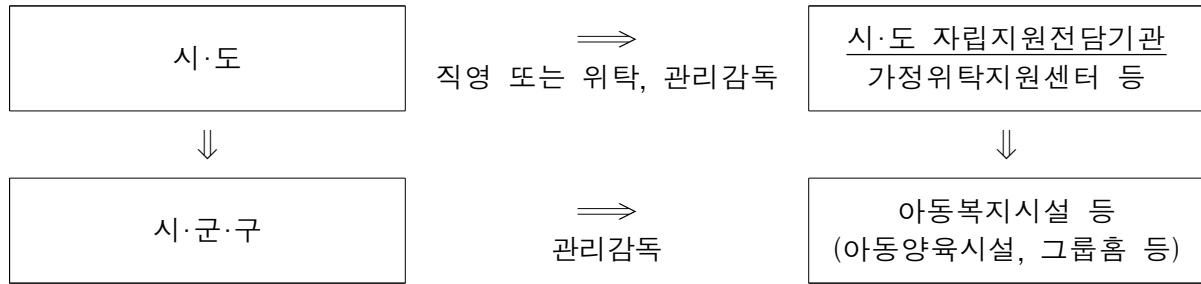
다. 검토 의견

- 현재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체계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시·도에서 운영 중인 시·도별 자립지원전담기관, 시·군·구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체계 >



27)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 될 경우 보호대상아동 지원 및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의 사후관리 데이터 입력, 사례관리 서비스 기록 등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 관리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이 중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0조²⁸⁾에 따라 자립 지원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사례관리,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2021년 2월 말 기준 서울, 부산 등 전국에 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음²⁹⁾.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현황 >

(2021년 2월 말 기준)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개소	○	○	X	X	X	X	X	X	○	○	X	○	X	○	○	X	○
인력	3	9	-	-	-	-	-	-	5	6	-	2	-	6	2	-	1
위탁기관	아동복지협회	아동복지협회							복지법인에베에셀	아동복지협회		아동복지협회		아동복지협회	아동복지협회		아동복지협회

* 자료 : 보건복지부

□ 발의된 개정안들은 현재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근

28)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29)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 중인 8개 시·도 중 7개 시·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아동복지협회에 업무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거를 명확하게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업무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³⁰⁾, 설치기준과 운영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강준현·김예지·이재정·신현영의원안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안규백·홍정민의원안은 재량규정으로 각각 두려는 것임.

□ 현재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에 대한 국고지원이 부재하고³¹⁾, 미 설치된 지방자치단체가 많아 지역별 자립지원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자립지원에 대한 공적인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업무의 통합관리를 통해 지역 및 보호체계 간 편차를 해소하여 균형 있는 자립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그 취지는 긍정적임.

□ 다만, 의무적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확대는 국가와 지자체의 상당한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고, 지자체 별로는 그 여건에 따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강준현·안규백·홍정민·신현영의원안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김예지의원안은 국가로, 이재정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발의된 개정

30) 강준현의원안은 업무내용으로 자립지원 정보제공 및 개인별 상담 지원, 상담전화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재정의원안은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이 없음.

31) 현재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별도의 국고지원이 없이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안들이 지역별 자립지원 인프라 마련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대한 공적인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편차 없는 자립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를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주체로 하는 것이 아동에게는 보다 최선의 이익일 것이라고 판단됨.

- 참고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13)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2022년 정부예산안에는 이를 지원(인건비·사업비·운영비 등)하기 위한 예산 64억 500만원이 반영되어 제출되었음.

< 자립지원전담기관 확대 계획 >

- (전담기관)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지원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 아동
 - (수행방식) 지자체 공모 → 공공기관·법인 위탁(심사, 계약, 사업수행)
 - (역할) 광역단위 자립지원 업무 총괄 및 아동 사후관리 등
 - ①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사례관리(주거, 생활, 교육, 취업, 직업훈련, 심리 정서, 건강, 사회적 관계 등)
 - ② 자립지원 종사자 교육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등 자립업무 관련 상담·지원
 - ③ 자립지원 대상아동의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 ④ 자립지원 대상아동에 대한 DB구축 및 운영(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 ⑤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중앙·지방), 자립체험관 운영 및 연구 활동
 - ⑥ 기타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지원내용) 인건비(자립지원 전담인력), 사업비(주거 등 사례관리비), 운영비 등
 - ※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64억원이 반영되었음.
 - (전담인력)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하여 자립지원 업무 체계화 및 정체성 강화
 - (배치기준) '22년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 배치
 - (역할)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사례관리), 시설·그룹홈·가정위탁 자립지원 업무지원 등

* 자료 : 보건복지부

7.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 상향 등 자립지원 강화

(제10992호 김예지의원안, 제11194호 안규백의원안, 제11237호 정춘숙의원안, 제12036호 강준현의원안, 제12595호 홍정민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발의된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³²⁾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김예지·안규백·정춘숙의원안은 18세에서 19세로, 강준현·홍정민의원안은 18세에서 24세로 각각 상향하려는 것임.
- 아울러, 강준현의원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거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홍정민의원안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전 경계선 지능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 해당 아동이 자립 능력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장애인 거주시설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김예지·안규백·정춘숙의원안	강준현의원안	홍정민의원안
제15조(보호조치) ①·② (생략)			제15조(보호조치) ①·② (현행과

32)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illegible]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생략)

<신설>

제38조(자립지원)
① (생략)

<신설>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 연계할 수 있다.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자립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른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거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 ----- ----- -----범위, 제2항에 따른 주거시설 설치·운영----- ----- -----.	
--	--	--	--

나. 보건복지부 의견

□ (보호조치 종료연령 상향) 현행 보호조치 종료 연령인 만 18세는 완전한 자립 준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른 나이로 보호조치 종료 연령 상향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통용기준, 「아동복지법」 모든 조문에 규정된 아동 연령 규정, 아동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수용성 여부 등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보호조치 종료 연령 자체의 상향보다는 보호기간 연장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 (주거시설 설치·운영)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나, 별도 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자립준비청년의 선호

지역 등 수요에 맞는 공급이 어려울 수 있고, 해당 시설 거주 청년에 대한 낙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음.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7월 마련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통해 주거지원 강화도 함께 추진 중임.

□ (경계선지적지능검사 추가) 경계선 지적 지능 검사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재 아동의 상담결과를 고려하여 지능검사를 포함한 인지·정서·행동·발달검사를 필요에 따라 선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경계선 지적 지능검사보다는 탄력적으로 아동의 상황에 맞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례관리) 현재 아동복지시설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지원 중이며, 내년부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한 보호종료아동 사례관리도 실시할 예정으로 보호대상아동 또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의 법적 근거 마련 취지에 공감함.

□ (장애인거주시설 연계)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장애유형, 자립가능성, 대상자별 상황과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해, 장애인시설 연계와 같은 구체적 사항을 별도 규정하기보다 대상자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함.

다. 검토 의견

□ 발의된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김예지·안규백·정춘숙의원안은 현행 18세에서 19세로, 강준

현·홍정민의원안은 18세에서 24세로 각각 상향하려는 것임. 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며, 김예지·안규백·정춘숙의원안은 「민법」 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³³⁾된 것에 맞추어 법령 간 법적 통일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민법」 상 성년의 개념은 독립적인 법률행위의 능력과 관련한 것인데 비해, 「아동복지법」은 사회보장 정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 기준을 정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설정의 목적과 취지가 상이한 측면은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인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 다만, 이는 「아동복지법」 및 「UN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연령(18세) 기준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 현재도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이 퇴소연령 기준에 도달하였더라도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계속해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연장³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3)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2011. 3. 7. 개정, 2013. 7. 1. 시행 : 종전 제4조(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34)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 또한, 보호연장자로 인해 보호·양육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의 입소기회가 줄어들 수 있고, 보호대상아동에게는 보호기간 장기화로 인한 자립지체 등의 문제도 우려되므로³⁵⁾,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13)에 따르면, 정부는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 아동 본인이 희망하면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므로, 이의 도입경과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성년과 미성년을 구분하는 연령 기준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생활과 관련된 경우에는 연령 기준을 18세로, 감사청구권·주민소환투표권 등 국민 또는 시민으로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5)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의 연장은 아동의 자립능력 향상 및 자립심 고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음.

행사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은 「민법」 상 성년인 19세로(다만 선거권은 18세),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의 연령 기준은 24세로 정하고 있는 등 연령 기준은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음.

< 주요 법률상 연령기준 현황 >

연령	관련 법률
18세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의 연령(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8세 미만) - 범칙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2항, 18세 미만) - 국민연금가입대상(국민연금법 제6조, 18세 이상 60세 미만) - 공연법상 연소자(공연법 제2조, 18세 미만) - 선거권(공직선거법 제15조, 18세 이상) - 부양자녀의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18세 미만) - 소년법상 사형·무기형의 완화(소년법 제59조, 18세 미만)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결격사유(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 18세 미만) - 제1국민역 편입시기(병역법 제8조, 18세) - 운전면허 연령(도로교통법 제82조, 18세 미만)
19세	- 징병검사 연령(병역법 제11조, 19세) -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세 미만) - 감사청구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19세 이상) - 주민소환투표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19세 이상)
20세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시점(국적법 제12조, 20세 전) - 배심원의 자격(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20세 이상)
24세	- 청소년의 연령(청소년기본법 제3조, 9세 이상 24세 이하)

□ 한편, 강준현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보호종료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주거는 보장될 필요가 있고, 주거환경은 이들의 신체·정신 건강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이나,

현재 여러 부처에서 개별 법률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들과 유사·중복의 우려가 있다는 점³⁶⁾, 현행 「아동복지법」은 자립지원의 항목으로 주거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³⁷⁾,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은 현행법상 체계 안에서도 꾸준히 확대되어 오고 있다는 점³⁸⁾ 등을 고려한다면, 법 개정뿐만 아니라 제도적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또한, 홍정민의원안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경계선 지적 지능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할 때 해당 아동이 자립 능력

36) 주요 주거지원 정책(예시)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 및 사례관리를 함께 지원
- (공공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 및 보호종료아동 1순위 입주자격 부여,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 지원 등
- (자립지원시설)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이후 주거 및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운영 시설

37)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 현재에도 자립지원시설, 민간·지자체 희망디딤돌센터, 지자체 자립체험관, 국토부·LH 등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거지원 시설이 존재하며, 지원범위는 꾸준히 확대해 오고 있음.

이 없거나 보호자가 없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장애인 거주시설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우선, 경계선 지적 지능 검사 실시와 관련해서 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전 양육강도가 높은 경계선 지능 아동³⁹⁾을 선별하여 이들의 양육에 적합한 전문가정위탁 등을 통한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현재도 다양한 심리검사 등을 통해 아동의 특성을 파악한 보호조치를 시행 중이고, 보호조치 후라도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보호를 수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도 그 취지는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별도의 명시적 근거를 법률에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39) - 경계선지능은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IV-TR)’에 의하면 ‘IQ 71~84에 해당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할 발달장애군’으로 정의하며, 미국의 의학사전 및 관련 사전에서는 경계선지능아동을 ‘적응행동에 가벼운 장애를 가지고 있는 IQ 71~84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분류하고 있음(「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 효과성 보고서」, p11, 201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 경계선지능을 가진 아동은 취업과 사회 적응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자립에 실패하여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 비행이나 범죄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집단놀이치료가 경계선지능 시설아동의 사회기술증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최윤미, 2016)의 내용을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 효과성 보고서」(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2017)에서 인용함).

<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사업 개요 >

□ 목 적

-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자립능력 향상
-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사업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아동
 - * 가정위탁아동은 별도 심리치료 지원사업 있어 제외
- (서비스 제공 회기) 아동 1인당 최대 50회(주1회 이상)
- (서비스 제공자)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이수자인 돌봄종사자
- (서비스 내용) 종합심리검사보고서 및 아동 개인별 상담을 통한 욕구 고려, 서비스 계획 수립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실시
 - * 인지·사회성·정서·자립(진로탐색,경제,성교육 등) 및 학업·취업지원(특화프로그램) 등
- (종사자 교육)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및 기존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보수교육 실시
 - * 양성교육(20h) 이수자 : ('19) 398명 ('20) 393명 ('21.8) 537명

□ 다음으로, 자립능력이 부족한 보호종료아동의 장애인 거주시설 연계와 관련해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는 장애인이 그 대상이므로, 이는 장애인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현재는 장애아동이 보호조치가 종료된 경우라도 해당 시설에서 연장보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 아동에 대해서는 보다 특별하고 전문적인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점, 장애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다양한 보호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바람직해 보이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아동 및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 등과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명시적 근거를 두지 않더라도 보호종료아동의 이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도

장애인 거주시설로 연계할 수도 있다는 점, 최근 장애인 시설에서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탈시설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례관리⁴⁰⁾ 실시 규정과 관련하여, 사례관리란 아동의 욕구 및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 및 지원연계를 제공하며, 서비스의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력 및 예산의 안정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⁴¹⁾을 통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사례관리의 의미와 내용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현재도 일부 아동에 대해서는 사례관리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⁴²⁾ 등을 고려한다면, 동 규정이 사례관리 실시에 대한 포괄적·선언적 규정으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칠 가능성도 있으므로, 취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그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0) 상담 등을 통해 아동의 욕구 및 특성에 맞는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 및 지원연계 등을 제공하며, 서비스의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41) 보호종료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개인별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동의 입장에서는 적합한 지원을 제때에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음.

42) 예컨대, 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을 통해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등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전문가에 의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자립실현 및 자립생활의 기반구축을 지원하고 있음(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매입주택 등 거주기간 동안 사례관리를 위하여 매월 20만원의 사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음).

8.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제10992호 김예지의원안, 제11194호 안규백의원안, 제11237호 정춘숙의원안, 제11588호 최연숙의원안, 제12061호 강선우의원안, 제12627호 신현영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발의된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의사에 따라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호대상아동이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김예지·정춘숙의원안은 2년, 안규백의원안은 3년, 최연숙의원안은 5년, 신현영의원안은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강선우의원안은 보호대상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김예지 의원안	안규백 의원안	정춘숙 의원안	최연숙 의원안	강선우 의원안	신현영 의원안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 ③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 ③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 ③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 ③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 ③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 ③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 ③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④ ----	④ ----	④ ----	④ ----	< <u>삭제</u> >	④ ----
에도 불	-----	-----	-----	-----		-----
구 하 고	-----	-----	-----	-----		-----
제15조에	-----	-----	-----	-----		-----
따라 보	-----	-----	-----	-----		-----
호 조 치	-----	-----	-----	-----		-----
중인 아	-----	-----	-----	-----		-----
동이 다	-----	-----	-----	-----		-----
음 각 호	-----	-----	-----	-----		-----
의 어느	-----	-----	-----	-----		-----
하 나 에	-----	-----	-----	-----		-----
해당하면	-----	-----	-----	-----		-----
시·도지	-----	-----	-----	-----		-----
사, 시장	-----	-----	-----	-----		-----
·군수·	-----	-----	-----	-----		-----
구청장은	-----	-----	-----	-----		-----
해당 아	-----	-----	-----	-----		-----
동의 보	-----	-----	-----	-----		-----
호기간을	-----	-----	-----	-----		-----
연 장 할	-----	-----	-----	-----		-----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1 . . 2 .	1 . . 2 .	1 . . 2 .	1 . . 2 .	1 . . 2 .	< <u>삭제</u> >	1 . . 2 .
(생략)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 <u>신설</u> >	2의2. 취업 이나 취	2의2. 보 호 대 상	2의2. 보 호 대 상	3. 취업이 나 취업		3. 취업이나 취업 준

	<u>업 준비</u> <u>등의 사</u> <u>유로 보</u> <u>호 대 상</u> <u>아 동 이</u> <u>보 호 기</u> <u>간 연장</u> <u>을 요청</u> <u>하여 2</u> <u>년 이내</u> <u>의 범위</u> <u>에서 보</u> <u>호 기 간</u> <u>을 연장</u> <u>하는 경</u> <u>우</u>	<u>아 동 이</u> <u>3년 이</u> <u>내의 범</u> <u>위 에 서</u> <u>보 호 기</u> <u>간 연장</u> <u>을 요청</u> <u>하는 경</u> <u>우</u>	<u>아 동 이</u> <u>2년 이</u> <u>내의 범</u> <u>위 에 서</u> <u>보 호 기</u> <u>간 연장</u> <u>을 요청</u> <u>하는 경</u> <u>우</u>	<u>준비 등</u> <u>의 사유</u> <u>로 보호</u> <u>대 상 아</u> <u>동이 5</u> <u>년 이내</u> <u>의 범위</u> <u>에서 보</u> <u>호 기 간</u> <u>연 장 을</u> <u>요 청 하</u> <u>는 경우</u>	<u>비 등의</u> <u>사 유 로</u> <u>보 호 대</u> <u>상 아 동</u> <u>이 6년</u> <u>이 내 의</u> <u>범 위 에</u> <u>서 보호</u> <u>기간 연</u> <u>장을 요</u> <u>청 하 는</u> <u>경우</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 <u> </u> <u>삭</u> <u>제</u>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 (<u>보 호 기</u> <u>간의 연</u> <u>장</u>) ① <u>시 · 도</u> <u>지사 또</u> <u>는 시장</u> <u>· 군 수</u> <u>· 구 청</u> <u>장은 제</u> <u>16조 제1</u> <u>항 에 도</u>

					<u>불 구 하</u> <u>고 연 령</u> <u>이 18세</u> <u>에 달한</u> <u>보 호 대</u> <u>상 아 동</u> <u>본 인 의</u> <u>의 사 에</u> <u>따라 24</u> <u>세 까 지</u> <u>보 호 조</u> <u>치를 연</u> <u>장 하 여</u> <u>야 한다.</u> <u>이 경우</u> <u>보 호 대</u> <u>상 아 동</u> <u>이 24세</u> <u>이 전 에</u> <u>보 호 조</u> <u>치 종료</u> <u>를 요청</u> <u>하면 보</u> <u>호 조 치</u> <u>를 즉시</u> <u>종 료 하</u> <u>여야 한</u> <u>다.</u> <u>② 제15</u> <u>조 및 제</u> <u>16조 제1</u> <u>항에 따</u> <u>라 보호</u> <u>중인 아</u>
--	--	--	--	--	--

					<u>동이 다</u> <u>음 각 호</u> <u>의 어느</u> <u>하 나 에</u> <u>해당하면</u> <u>시·도지</u> <u>사, 시장</u> <u>·군수·</u> <u>구청장은</u> <u>해당 아</u> <u>동의 보</u> <u>호기간을</u> <u>연 장 할</u> <u>수 있다.</u> <u>1. 「고등</u> <u>교 육</u> <u>법」 제</u> <u>2 조 에</u> <u>따른 대</u> <u>학 이하</u> <u>의 학교</u> <u>(대학원</u> <u>은 제외</u> <u>한다)에</u> <u>재학 중</u> <u>인 경우</u> <u>2. 제52조</u> <u>제 1 항</u> <u>제 1 호</u> <u>의 아</u> <u>동 양 육</u> <u>시 설</u> <u>또 는</u> <u>「근로</u>
--	--	--	--	--	--

					<u>자 직 업</u> <u>능 력</u> <u>개 발</u> <u>법 』</u> <u>제 2 조</u> <u>제 3 호</u> <u>에 따</u> <u>른 직</u> <u>업 능력</u> <u>개 발 훈</u> <u>련 시 설</u> <u>에 서</u> <u>직 업</u> <u>관 련</u> <u>교 육 ·</u> <u>훈 련 을</u> <u>받 고</u> <u>있 는</u> <u>경우</u> <u>3. 그 밖</u> <u>에 위</u> <u>탁가정</u> <u>및 각</u> <u>종 아</u> <u>동 복 지</u> <u>시 설 에</u> <u>서 해</u> <u>당 아</u> <u>동 을</u> <u>계 속 하</u> <u>여 보</u> <u>호 · 양</u> <u>육 할</u> <u>필요가</u>	
--	--	--	--	--	---	--

					있다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	--	--	--	--	--------------------------------	--

나.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의견

□ (보건복지부) 현행 보호조치 종료 연령인 만 18세는 완전한 자립 준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른 나이로 전반적인 보호기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학진학, 취업 등 별도의 보호연장 사유를 요하지 않더라도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상황에 맞게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법」 및 최근 발표된 정책안 등에서 보호연장, 자립수당 지급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간 사회서비스 제공이 보호아동의 의지를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우려됨.

다. 검토의견

□ 김예지·안규백·정춘숙·최연숙 의원안은 시행령에 규정⁴³⁾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보호연장 가능범위를 김예지·정춘숙의원안의

43)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안규백의원안은 1년에서 3년으로, 최연숙의원안⁴⁴⁾은 1년에서 5년으로, 신현영의원안은 1년에서 6년으로 각각 확대하려는 것이며, 강선우의원안은 보호대상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는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이른 나이의 자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나, 본인의 의사나 자립준비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보호가 종료되는 현실⁴⁵⁾을 고려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안정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

□ 보건복지부는 만 18세가 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대상아동(이하, ‘보호종료아동’이라 함)⁴⁶⁾의 자립준비 및 욕구를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아동의 욕구에 부합하는 자립준비 지원 정책 및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 4년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최근 실시한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에 보호종료아동의 취업비중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이후부터는 갈수록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44) 김예지·최연숙의원안은 기간연장의 사유로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의 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규백·정춘숙의원안은 예시적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음.

45)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대학생 보호연장을 거부하는 지자체, 만 18세가 도래하면 무조건 보호종료시키는 양육시설 등이 있다고 함.

46)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 보호대상아동 취업상태 현황 >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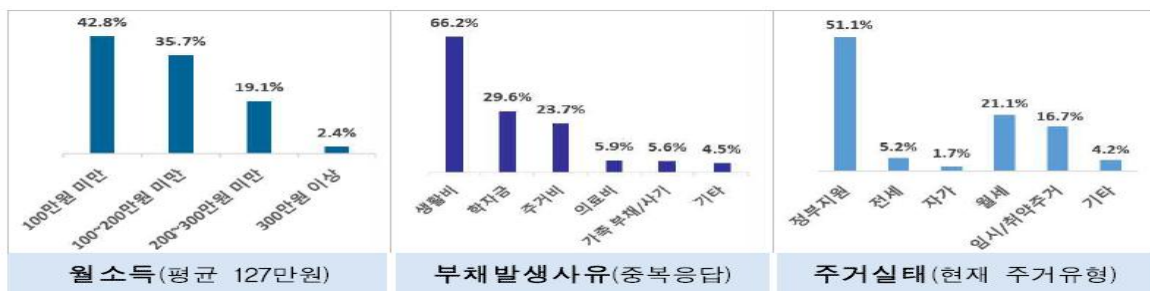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미취업	취업
2008년 조사	1,432	329(35.7)	1,103(64.3)
2012년 조사	523	153(29.3)	370(70.7)
2016년 조사	1,209	591(48.9)	618(51.1)
2020년 조사	3,104	1,763(56.8)	1,286(41.4)

* 자료 : 보건복지부(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p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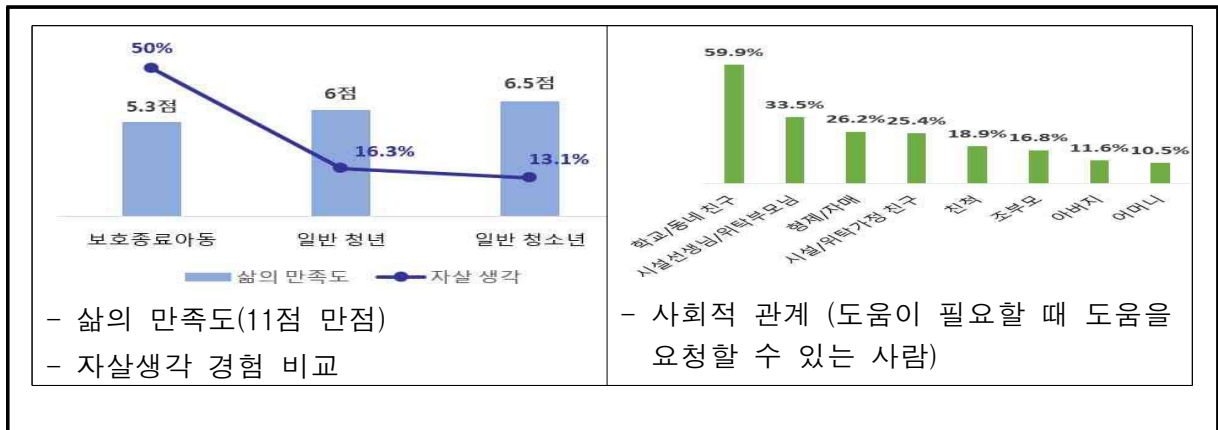
* 해당 조사에는 보호종료아동의 일부만이 응답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보호종료아동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며, 이 밖에도 보호종료아동은 부모의 보살핌과 지원을 받아오던 일반아동에 비해 자립기반이 취약하고, 준비기간도 짧아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된데 따른 것으로 보임⁴⁷⁾.

-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를 보면, 보호종료아동의 월 평균 소득은 127만원으로 최저임금과 52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생활비, 주거비, 학자금 등으로 인해 부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대다수는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51.1%)에 거주하거나, 임시·취약 주거에 거주하는 경우(16.7%)도 다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보호종료아동은 일반청년·청소년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고, 자살생각 경험 등이 높아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할 때 보호자보다는 친구에게 요청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어려움 발생시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지지기반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자료 : 보건복지부(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 이에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을 사유로 해당 아동이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일정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24세까지는 보호기간을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하려는 각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판단됨.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 재학 중이거나 직업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특별한 기간 제한 규정 없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⁴⁸⁾, 취업 등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발의된 개정안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취업 또는 취업 준비 등을 이

47)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1.7.13.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관련 지원정책을 추진중에 있음.

48)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유로 보호대상아동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2년, 3년, 5년, 6년 또는 24세까지로 확대할 경우 보호연장자로 인해 보호·양육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의 입소기회가 줄어들 수 있고⁴⁹⁾, 보호기간 장기화로 인한 자립지체 및 재정부담 등의 문제도 우려되므로⁵⁰⁾, 이에 대해서는 보다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보호대상아동 연장사유별 통계(2018년·2019년) >

(단위: 명, %)

구분	계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1	제3호의2	제3호의3	제3호의4
2018	237	200	9	5	1	6	16
	100.0	84.4	3.8	2.1	0.4	2.5	6.8
2019	176	141	13	0	2	8	12
	100.0	80.1	7.4	0	1.1	4.5	6.8

* 자료 : 보건복지부

* 연장사유통계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은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서 파악불가)

둘째, 강선우의원안은 만 24세 도래 전이라도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 종료를 요청하면 보호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조치를 즉시 종료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시의 상황과 여건⁵¹⁾에 따라 아동의 의견과는 달리 지속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보완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9) 이와 관련해서는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LH 임대주택, 지자체 임대주택 등 공공 주거지원제도 활용을 통해 주거를 분리하여 보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50)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의 연장은 아동의 자립능력 향상 및 자립심 고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음. 한편,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보호연장으로 인한 자립지연, 재정부담 등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으나, 충분한 자립준비 기간확보를 통해 실질적 자립을 유도할 수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비용을 낮출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51) 예를 들어 장애아동이거나 경계선지능아동 등의 경우, 자립준비가 완료되지 않음이 명백하나 보호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지속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셋째,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13)에 따르면, 정부는 보호대상아동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별도 사유없이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는 발의된 개정안과 그 취지가 유사하므로⁵²⁾, 이의 추진 경과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보호종료아동 지원기간에 관한 해외 주요국 사례는 다음과 같음.

< 해외 주요국의 보호종료아동 지원 제도 >

미국	영국	일본
○ (지원대상) : 18세에서 <u>최대 21세</u>로 연장하되, 주정부가 결정 ○ (주거지원) 공공주거 및 주거선택 바우처 프로그램 운영(세입자가 자신의 총소득 30%에 이르는 금액만을 월세로 지불하도록 함) 18~24세 보호종료 청소년이 <u>36개월간</u> 바우처를 사용하여 주거비 지원 ○ (교육지원) CFCIP기금에 의한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2~4년제 대학교에서 <u>최장 5년 또는 23세까지</u> 지원 ○ (건강지원) 「건강보험 개혁법」에 따라 <u>26세 이하</u>의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메디케이드 지원	○ (Staying Put) 보호종료자와 양육자가 원하면 <u>21세까지</u> 이전 위탁가정에서 함께 살도록 지원(‘14~) * 시설 생활아동은 보호종료 이후 가까운 곳에 살도록 지원하는 Staying Close 시범사업 중(‘16~) ○ (PA) 개별상담사(Personal Advisor)가 <u>25세까지</u> 모든 보호종료아동 욕구사정, 진로계획 작성 지원(‘18.4~) - 21세까지 필수, 22~25세 아동은 신청 시 지원 - ‘관련아동’ 및 ‘이전관련아동’에게 PA 지원 ○ (marker 표시제) 노동연금부 DB에 보호종료자 상시 표시하여, ‘Jobcenter Plus’의 필요 지원을 받게 함	○ (코디네이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계획 수립에 ‘지원 코디네이터’가 참여 ○ (지원대상) 18세 도달해 보호종료된 아동 가운데 자립 지원이 계속 필요한 경우에 <u>22세까지</u> 거주지원, 생활·취업상담, 생활비 지원이 가능 ○ (지역사회연계) 지원코디네이터가 보호종료자를 위한 계속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도도부현과 지정도시에 설치된 아동 상담소(아동복지법 따른 행정기관) 아동담당 직원과 협력을 강조 ○ (대부제도) 주거비(월세), 생활비, 자격증 취득비 등을 대부해 주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반환을 면제해주는 대부사업 실시

*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보고서 제8호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p.60~61, 2018

52) 특히, 강선우의원안과 그 취지가 가장 유사함.

(제11194호 안규백의원안, 제11328호 이재정의의원안)

□ 개정안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항목으로서, 안규백의원안은 ‘의료’, 이재정의원안은 ‘심리상담’을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

– 121 –

나. 보건복지부 의견

-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 등을 통해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심리상담 지원 필요성에 공감함.

다. 검토 의견

-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⁵³⁾’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질병이 있었던 보호종료아동 중 46.7%가 일부 치료만 받았고, 10.0%는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치료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치료비가 없어서’가 37.7%로 파악됨⁵⁴⁾.

< 최근 1년간 질병이 있었던 보호종료아동 치료 현황 >

(단위 : 명)

합계	완치 또는 치료 중	일부 치료	치료받지 못함
1,992(100%)	862(43.3%)	930(46.7%)	20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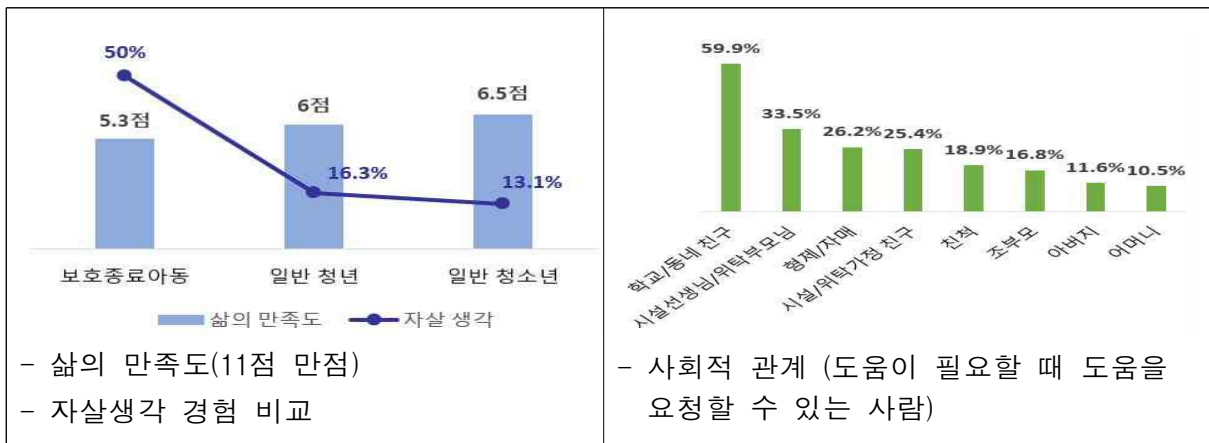
* 자료: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 한편, 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보호종료아동은 일반청년·청소년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고, 자살생각 경험 등이 높아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할 때 보호자보다는 친구에게 요청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어려움 발생시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지지기반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53) 해당 조사는 최근 1년간 질병을 경험한 보호종료아동에 한정해서 실시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54) 기타 사유는 많이 아프지 않아서(34.3%), 귀찮아서(12.9%), 기타(ex. 병원이 멀어서,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서 등) 등으로 조사되었음.

<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 자살생각 경험 비교 및 사회적 관계⁵⁵⁾ >



* 자료: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 개정안은 이와 같이 보호종료아동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아동복지법」에 자립지원 항목으로 열거된 주거·생활·교육·취업 외에 '의료' 및 '심리상담'을 각각 추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임.

□ 다만, 해당 조항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항목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현재도 이들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다양한 의료 및 심리상담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⁵⁶⁾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제도적으로 지원을 강화하여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명시적인 법적 규정을 두어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55) 해당 조사는 보호종료아동의 일부만이 응답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56) 의료지원과 관련해서는 보호종료아동에게는 의료급여, 건강검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심리상담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국상담심리학회와 연계하여 1:1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중임.

< 보호종료아동에게 적용 가능한 의료·심리상담 지원 관련 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의료급여)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③ 의료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자료: 보건복지부

10. 보호종료아동 취업지원 강화

(제11328호 이재정의의원안, 제12890호 최연숙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이재정의원안은 보호종료아동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최연숙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을 강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현행	이재정의원안	최연숙의원안
제38조(자립지원) ① (생략) <u><신설></u>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자립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대상아동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 ----- ----- ---및 제2항에 따른 정책 등에----- -----.

<신 설>	제41조의2(재정지원)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 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 시설 퇴소 이후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 정지원을 할 수 있다.
-------	--

나. 정부부처 의견

□ (보건복지부) 이재정의원안과 관련해서는 보호종료아동은 같은 세대의 청년계층에 비해 가정의 보호나 지원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국가의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나, 자립을 준비하도록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에서 특별한 혜택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연숙의원안과 관련해서는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취업, 고용 등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현재 민관의 여러 제도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취업·고용 등 지원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임.

□ (행정안전부) 충분한 자립 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취지에 공감하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내용 및 추진 체계의 중복·혼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할 필요가 있음.

다. 검토의견

-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아오던 보호대상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은 부모의 보살핌과 지원을 받아오던 일반아동에 비해 자립 기반이 취약하고, 준비기간도 짧아 실제 많은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후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호종료아동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의 고용율과 실업률을 일반청년(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019)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보호종료아동은 고용율과 실업률이 각각 40.8%와 16.3%로 나타난 데 비해, 일반청년의 고용율은 43.5%, 실업률은 8.9%로 나타나 보호종료아동은 일반청년에 비해 고용율은 낮고, 실업률은 높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보호종료아동과 일반청년의 고용율과 실업율 비교 >

(단위: 명, %)

조사명	고용율	실업율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40.8%	16.3%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15~29세 대상)	43.5%	8.9%

* 자료 : 보건복지부(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 고용율: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100으로 산출,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는 취업자수/응답자수×100으로 산출

□ 발의된 개정안은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고용 및 주거 등 자립기반이 불안정하고 취업할 때에도 일자리의 질⁵⁷⁾이 담보되지 않는 등 안정적인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들의 안정적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서, 이재정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종료아동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고, 최연숙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종료아동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재정의원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서, 이를 통해 이들이 독립적인 성인으로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자발적이고도 사회적 책임에 기초한 기업의 적극적인 채용 분위기 조성 유도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러한 입법적 개입을 통한 지원강화는 기업경영의 자율성 및 영업활동의 자유와 상호 배치될 수 있고, 노동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 등에게는 현재도 재정지원 및 금융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데, 보호대상아동을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범위로 인정할지

57)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p.377)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비정규직 비율은 일반 청년 인구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고용형태 역시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여부, 청년 채용 시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유사 제도와 중복 가능성, 사회적으로 청년고용율이 낮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 간 취업기회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그 범위 등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의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

구분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주요 지원 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회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 지원한도 50명	· 월 200만원/250만원 한도(인증기업 2명, 예비기업 1명) · 자부담 10~50%	· 사업주 부담 사회 보험료 · 지원한도 50명 · 인증기업만 해당	· 인증기업 : 연 1억원, 최대 3억원 한도 · 예비기업 : 연 5천만원, 최대 3억원 한도 · 자부담 10~30%

* 자료 : 2021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세제지원 >

구분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기부금 인정
주요 지원 내용	·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향후 2년간 50% 감면 ('22.12.31.까지)	· 고유업무 사용 목적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 고유업무 사용목적 부동산 재산세 25% 감면 ('21.12.31.까지)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일반법인·개인·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 자료 : 보건복지부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개요 >

□ 사업내용

- (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원대상)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가능)
 - * 사행·유흥업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지원요건) ①+②+③ 모두 충족 필요
 -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② (기업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전년 연평균 대비)
 - ③ (신청기한 준수) 채용 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 (지원수준)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
 - * 月 75만원×1년 (연 최대 900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

□ 최연숙의원안관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취업알선 및 지도 등의 정책 강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 고용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도 정부는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⁵⁸⁾를 근거로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등을 실시중에 있음을 고려한다면, 제도적 지원 강화를 통해 그 취지를 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8)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호종료아동에게 지원하는 취업 관련 정책 개요(예시) >

-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에 보호종료아동 포함('21.3)하여 취업계획 수립, 구직촉진수당, 고용장려금 등 지원
 - 고용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보호종료아동 포함('21.3)
 - 「사회적기업육성법」상 고용 장려 기준인 취약계층에 포함('19) 및 채용특례 기간을 보호종료 5년 이내에서 만34세 이하로 개선하여 지원대상 확대('21)
 - * 고용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상 '취약계층 판단 기준' 개정 공고('19.7.5)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우대대상에 보호종료아동 포함하여 자격증 취득 비용 등 지원 강화('21.7)

* 자료: 보건복지부

1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

(제11237호 정춘숙의원안, 제12604호 홍정민의원안)

□ 정춘숙의원안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위원으로 지원대상아동을 대표하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홍정민의원안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정춘숙의원안	홍정민의원안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생략) <u><신설></u> 2. ~ 5. (생략) <u><신설></u>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u>② 국가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u>	제38조(자립지원) ① --- ----- ----- -----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자립에 필요한</u> <u>자립수당 지급</u>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 협의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생 략)	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 협의회) ① ----- ----- ----- -----공무원 및 지원대상아동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 -----. ② (현행과 같음)	
--	---	--

나. 보건복지부 의견

- 현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자립정착금, 자립수당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함. 아울러, 협의회 위원으로 지원대상아동을 대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아동의 의사를 자립지원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함.

다. 검토 의견

- 보호조치가 종결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는 아동은 사전에 충분한 자립 지원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생계 또는 주거 불안 등으로 인하여 범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대상 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지원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다양한 자립지원 정책을 실시 중(붙임참고)이며, 이 중 하나로 보호시설 등(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종료되는 아동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자립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자립정착금은 보호종료 후 일회성으로 지급되며⁵⁹⁾,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5년 간 매월 본인명의 계좌로 30만원이 지급됨.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개요 >

□ 자립정착금

- 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호
- 목적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퇴소 또는 위탁종료 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
- 현황
 - 보호종결아동에게 지자체별로 '21년 기준 1인당 500~1,000만원 지급
 - * 자립에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용에서부터 주거마련 등
 - 지방이양사업으로 지방재정 여건 및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자체 지급 편차 존재
 - * 2017년 이후 지침(아동분야 사업안내)에 최소 500백만원 이상 지급 권고

59) 자립정착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지방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 지급편차가 있음.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현황 >

(단위 : 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서울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부산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600	600	600
대구	300	300	300	300	300	3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인천	300	300	300	300	300	300	500	500	500	800	800	800	800	800	800
광주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대전	300	300	300	300	300	300	400	400	400	500	500	500	500	500	500
울산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세종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경기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1,000	1,000	1,000
강원	300	300	300	400	400	4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충북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충남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전북	500	500	300	500	500	3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전남	300	300	100	500	500	4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경북	500	500	300	500	500	3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경남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제주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 자료: 보건복지부

□ 자립수당

○ 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수당의 정기적인 지급’ 신설(시행일 '20.1.1)

○ 지급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아동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만18세 이후)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부터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적용을 받음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자립수당 지급 가능

* 시설 입소 경력은 있고,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①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종료 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6개월 이내)인 경우 ② 아동이 대학교 조기입학 등으로 인해 만17세에 보호종료되는 경우 등

○ 지급금액: 매월 20일,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원 입금

□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지급 근거가 이미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만⁶⁰⁾, 이를 상향규정함으로

60) 「아동복지법 시행령」

써 그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정춘숙의원안은 협의회 위원으로 지원대상아동을 대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있음.

협의회⁶¹⁾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됨.

-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

제38조(자립지원)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3.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정착금의 지급
 4.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수당의 정기적인 지급
-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3.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61) 「아동복지법」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9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구성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1.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취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아동의 자립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협의회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제4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으며, 자립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할 때마다 이에 준하는 실무 협의체 또는 관계 부처 협의기구 등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라고 함⁶²⁾.

- 개정안은 아동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 등을 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자립지원 정책을 마련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는 협의회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개정취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협의회가 실제로 구성·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2) 최근('21.4~7월)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 부처 합동 TF(각 부처 과장급 참여)를 운영한바 있음.

※ 붙임: 자립지원 실시 현황(예시)

구분	지원 내용								
생활지원	○자립정착금: 만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대학등록금 등 지급(지방이양사업) * '21년 17개 시·도 자립정착금 500~1,000만원 지급 ○자립수당: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30만원 지급('19~ '21년 약 8천명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보호종료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19~) * 만 24세 이하 보호종료아동 근로소득 공제 확대(40만원+30%→50만원+30%)								
주거지원	○그룹홈: 2년 간 무료 또는 최소한의 운영경비만 납입하여 거주 ○자립지원시설: 일정기간 숙소 및 상담·자립·생활 등을 지원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주거지원과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19~, '21년 기준 10개 시도 360명 지원)								
교육지원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한 찾아가는 자립교육, 자립체험교육 ○진로지원: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자원 연계 교육비* 지원 및 전국 8개 국공립전문대학 업무 협약을 통한 대학 진학 지원 * 온라인 어학교육(YBM) 등 지원 * 우선입학, 기숙사·장학금 지원 등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업무협약 체결('18.5월)								
고용지원	○고용부의 국민취업제도, 창업성공패키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제도</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국민취업제도</td><td> -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국민취업제도로 통합 </td></tr> <tr> <td>창업성공패키지</td><td> - 창업사관학교 내 창업준비 공간에서 창업계획 수립부터 최종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 </td></tr> <tr> <td>국민내일배움카드</td><td> - 취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에 참여토록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훈련비 지원 및 훈련이력 종합 관리하는 제도 * 기존 실업자·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 카드로 통합('20.1.1.) </td></tr> </tbody> </table> ○보호종료아동을 「사회적기업육성법」 취약계층 범위에 포함하여 사회적 기업의 보호종료아동 고용 장려	제도	내용	국민취업제도	-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국민취업제도로 통합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사관학교 내 창업준비 공간에서 창업계획 수립부터 최종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 취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에 참여토록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훈련비 지원 및 훈련이력 종합 관리하는 제도 * 기존 실업자·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 카드로 통합('20.1.1.)
제도	내용								
국민취업제도	-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국민취업제도로 통합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사관학교 내 창업준비 공간에서 창업계획 수립부터 최종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 취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에 참여토록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훈련비 지원 및 훈련이력 종합 관리하는 제도 * 기존 실업자·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 카드로 통합('20.1.1.)								
보건의료지원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각종 검사 및 치료 비용 지원(본인 일부 부담) ○건강보험: 저소득 소년소녀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10~30% 경감 *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만 21세 미만의 형제·자매로만 구성된 세대 * 연소득 36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과표 1억 35백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재산수준에 따라 10~30% 경감								

구분	지원 내용
자산형성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1:1 매칭으로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동일 금액 지원 * 가입아동 1인당 연간 적립금액(매칭금 포함) 111만원('20년)
심리·정서 지원	○바람개비서포터즈: 후배들을 위한 자립멘토로서 자립강의, 봉사활동, 멘토링,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자립선배모임 지원 * '11~'20년 바람개비 서포터즈 346명, 현재 활동 중인 서포터즈는 약 60여명 ○무료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10회 한도로 무료 심리상담서비스 제공('21년 100명 지원)
긴급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상 '위기사항'에 처한 경우 긴급지원 제공

* 자료 : 보건복지부

12. 아동학대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개선·보완

(제11626호 강선우의원안, 제11371호 한병도의의원안, 제11588호 최연숙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① 강선우의원안은 시스템 상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시·군·구 별로 입력·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② 한병도의의원안은 경찰관서의 장이 현장출동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스템 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③ 최연숙의원안은 시스템 상 아동학대관련 정보제공 요청권자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을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

현 행	강선우의원안	한병도의의원안	최연숙의원안
법률 제17784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2(아동 학 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생 략)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 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	법률 제17784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2(아동 학 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법률 제17784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2(아동 학 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 음)	법률 제17784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2(아동 학 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 음)

학대를 예방하
기 위하여 피해
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
위자에 관한 정
보와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
한 정보를 아동
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
야 한다. <후단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피해아동, 그 가
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관한
정보는 시·군·
구별로 입력·관
리하여야 한다.

[illegible]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44조의2</u>
			<u>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u>
			<u>장</u>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u>제9호부터 제11호</u> 까지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5. ----- ----- ----- <u>제8</u> <u>호부터</u> ----- ----- -----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u>	

현장출동 업무
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신고접수일, 신
고접수유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아
동학대정보시스
템상의 정보를
경찰관서의 장
에게 열람하도
록 할 수 있다.
다만, 열람되는
정보는 제22조
제2항 및 「아
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
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
관이 접수한 신
고 사항에 포함
되는 정보로 한
정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정에-----

		----- ----- 제5항에 따른 열 람 목적 외로--- ----- ----- ----- ----- ----- ----- ⑦ (현행 제6항 과 같음)	
--	--	---	--

나. 보건복지부 의견

- (강선우의원안)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 정보 입력 및 관리 권한을 시군구까지 확대하여 아동학대 대응 현장의 효과성을 높이는 취지에 공감함. 다만, '20년 10월부터 시행중인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 지역 내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출동, 조사 및 사례판단, 사례종결 등에 대해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 정보를 입력, 이용 등 관리하고 있는 바, 현장 의견, 유사 시스템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개정안을 검토할 계획임.
- (한병도의원안)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업무 수행 시, 학대신고이력 확인 등 신속한 정보열람을 통해 초기 대응의 이행력을 높일 필요성에 공감함.

- (최연숙의원안)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아동과의 접촉이 잦은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를 추가하여 아동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에 공감함.

다. 검토 의견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실시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재학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 학대로 인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혔다가 사망한 사건과 온몸에 멍이 든 채로 발견된 아동학대 사건, 16개월 아동 사망사건⁶³⁾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재학대 근절을 위한 체계적 제도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최근 6년 간 아동학대 관련 일반 통계 >

(단위: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
전체 신고건수	19,203	29,671	34,166	36,416	41,389	42,251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	16,651	25,878	30,923	33,532	38,380	38,929
최종 학대 판단건수	11,715	18,700	22,367	24,604	30,045	30,905
사망사건 발생건수	16	36	38	28	42	43

* 자료: 보건복지부(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 최근 5년간 재학대 건수 >

(단위: 건)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재학대 건수	1,591	2,160	2,543	3,431	3,671

* 자료: 보건복지부

63) “‘공포의 7시간’ 여행용 가방에 갇혔던 9살 초등생 끝내 사망” SBS 뉴스, 2020.6.4.
 “온몸 멍, 머리 핏자국…부모 학대에 도망 창녕 9살 아동, 주민이 구조”, 한겨레, 2020.6.8.
 “숨진 16개월 아기 부모, 아동 학대 혐의 피의자로 입건”, MBC, 2020.10.21

□ 정부는 아동학대·재학대를 예방하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 등 유관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위기아동 등에 대한 정보 공유는 제한적이어서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⁶⁴⁾.

특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대면상담 등을 통한 학대의심 아동 발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위기아동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⁶⁵⁾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아동학대 사건의 신고접수, 기초정보조사, 아동학대조사, 사례 판단, 사례점검·사후관리·심리치료 등의 사례관리, 교육·홍보·협력 등 아동학대 관련 업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전반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임.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개요 >

- (기능) 아동학대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아동학대 사건의 신고접수, 기초정보조사, 아동학대조사, 사례 판단, 조치결과의 사건처리와 안전평가, 서비스계획, 사례점검, 사후관리, 심리치료 등의 사례관리, 교육·홍보·협력 등 아동학대 관련 업무수행과 관련된 정보 전반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28조^{*}
 - *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 (구축연혁)
 - (최초개발) '02. 4월, - (1차개편) '03. 11월, - (2차개편) '12. 1월(690백만원), - (3차개편) '16. 10월(3,008백만원)

64)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에서는 기관 간 정보공유 부재와 협업노력의 부족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예컨대, 2020년 발생한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학대 피해사실 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학교에서는 해당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음.

65) 「아동복지법」

제28조의2(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주요기능

- (대상자관리) 학대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의 현황 관리
- (사례관리)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판단, 서비스계획 등
- (사업관리) 아동학대 예방·교육·홍보·협력을 위한 정보
- (통계관리) 아동학대 관련 현황 통계·보고서 통계 자료 제공

□ 사용자현황

-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 1,218명
- (경찰) 경찰청, 경찰서 아동학대담당경찰관 등 : 1,439명
-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장 및 보육사 : 282명
- (담당공무원) 시도담당공무원 : 15명

□ 참고로, 2020.12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 관련 사업별로 분산된 보호대상아동 및 돌봄 지원 관련 아동복지시스템 등을 통합·연계 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⁶⁶⁾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는바(2022.7.1. 시행), 향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운영할 예정임.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통합 예정 시스템 현황 >

구 분	내 용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 (개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 안전 확보, 사례 개입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시스템 ○ (주요 기능) 대상자 관리, 사건 관리, 사례 관리, 통계 등 ○ (주요 정보) 학대피해아동 정보, 학대 행위자 정보, 사례관리 정보, 사건관리 정보 등
·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 (개요) 입양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 (주요 기능) 대상자 관리, 통합검색 및 매칭, 국가입양 진행기록 조회 등 ○ (주요 정보) 입양대상 아동 정보, 친부모 정보, 양부모 정보 등
· 실종아동정보시스템	○ (개요)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실종 업무 및 아동 홍보를 지원하는 시스템 ○ (주요 기능) 실종 홍보, 실종아동관련 자료관리, DNA정보 관리, 통계 등 ○ (주요 정보) 실종아동 정보, 보호자 정보, DNA 정보 등
·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시스템	○ (개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종사자 및 아동복지교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홈페이지 ○ (주요 기능) 지역아동센터 종합정보, 교육관리, 아동복지교사 관리 등 ○ (주요 정보) 회원 정보, 시설 정보, 교육관리 정보, 아동복지교사 정보 등
·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평가시스템	○ (개요) 지역아동센터 산하 시설의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하기 위한 시스템 ○ (주요 기능) 자체평가, 평가결과 입력, 평가 이력관리, 만족도 조사 등 ○ (주요 정보) 시설 정보, 평가정보, 평가위원정보 등
· 나눔플러스 I-ON	○ (개요) 지역아동센터의 후원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 (주요 기능) 지원처 관리, 지원프로그램 관리, 미니홈피 관리 등 ○ (주요 정보) 지원처 정보, 지원프로그램 정보, 프로그램 신청자 정보 등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 (개요) 보호,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업무를 전산화하여 아동자립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 (주요 기능) 자립지원 통합관리, 자립관리, 커뮤니티, 통계 등 ○ (주요 정보) 대상자 정보, 사례관리 정보, 자립지원관리 정보 등
·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시스템	○ (개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 (주요 기능)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업무지원, 사례관리 지식 지원 등 ○ (주요 정보) 통합사례관리 정보, 서비스 연계 및 자원관리 정보 등
·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	○ (개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아동, 세대 위탁현황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관리시스템 ○ (주요 기능)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관리, 일반상담 관리, 교육사업관리, 통계 등 ○ (주요 정보) 위탁아동정보, 위탁부모 정보, 교육사업 정보 등
· e-아동 행복지원시스템	○ (개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기아동 발굴 지원 시스템 ○ (주요 기능) 자료수집, 빅데이터 분석, 대상자 관리, 데이터 저장 등 ○ (주요 정보) 외부입수정보, 복지사각정보, 현장조사 결과 등

*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의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라 파악한 시스템 현황이며,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음.

- 시스템의 운영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및 각 지자체에 사용권한을 주어 아동학대 관련 정보 및 통계 등을 공유·활용하며, 학대 관련 기초정보 등 입력업무는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가 수행하고 있음.
- 발의된 개정안들은 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 우선, 강선우의원안은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시·군·구 별로 입력·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 관련 정보나 통계의 제공범위를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정보공유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대의심 아동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발굴·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그 취지는 긍정적이나,

보건복지부는 현재도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가 기초정보를 입력하고 있고, 이로부터 추출되는 정보와 통계도 시·군·구 별도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하는 바,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시스템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66) 동 사업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관련 업무의 통합적 정보관리를 구현하기 위한 개념적 시스템이며, 물리적으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일부로 구축될 예정임.

판단됨.

□ 다음으로, 한병도의원안은 현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장이 시스템상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제28조의2⁶⁷⁾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판사, 검사 및 경찰관서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은 시스템 상의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 등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접수로 출동하는 경찰관의 경우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실시간으로 학대관련 정보가 공유되기 어려워 적극적·선제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67) 「아동복지법」

제28조의2(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2. 판사, 검사 및 경찰관서의 장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4. 제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요청 목적 외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이에 한병도의원안은 별도의 요청 없이도 경찰관에게 신고접수 이력이 있는 아동학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찰관은 해당 정보를 토대로 그 징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피해아동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시스템상 정보제공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학대 관련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의 무분별한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인데, 개정안은 정보제공의 범위를 아동학대 신고접수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⁶⁸⁾, 그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이의 노출로 인한 피해의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⁶⁹⁾.

다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현재 실시간 정보활용이 가능하도록 경찰청과 실무적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하는바,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제도보완으로 그 취지를 달성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마지막으로, 최연숙의원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 상 아동학대 관련 정보⁷⁰⁾에 대한 요청권자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을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

68) 목적 외 이용에 대해서는 제재규정도 두고 있음(「아동복지법」 제28조의2제5항)

69) 정보의 종류 및 활용범위,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간 충분한 실무적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0) 신고접수현황, 아동학대행위자 정보, 피해아동 정보, 학대사례, 학대피해조사 및 조치결과 정보 등

시스템 상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 등에 관한 정보요청 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학대피해아동 정보 등을 유관기관 등과 공유하여 아동학대·재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이나,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정보요청 권한이 없어 이와 같은 지역돌봄기관에서의 학대 관련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아동학대 징후를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으며, 특히 이들 기관은 평소 아동이 활동하는 주된 기관들로서 아동학대 관련 정보는 아동학대·재학대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는 점, 정보공유 기관 간 협업체계를 통해 학대 의심 아동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발굴·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13. 아동학대 언론보도기준 마련(제11045호 강선우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 개정안은 아동학대 등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지나치게 상세하거나 자극적이어서 피해아동과 가족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로 하여금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언론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⑦ (생략) <u><신설></u>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u>국가는 아동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언론의 아동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u>
<u><신설></u>	제6조의2(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4조제8항에 따른 아동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정부부처 의견

- (보건복지부)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여 아동에 대한 2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성에 공감함.
- (방송통신위원회) 아동학대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본 법안의 적용대상인 방송사업자는 아동학대 보도에 대해서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송심의를 받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 또는 제재조치를 받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검토의견

- 아동학대사건 보도에 대해서는 경쟁적으로 선정적·자극적인 내용이 반복되거나, 피해아동 관련 정보 등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피해아동이나 가족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⁷¹⁾.

최근 아동학대 사례발생 증가를 계기로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 이러한 언론보도 중에는 관심유도를 위한 자극적인 표현묘사와 지나치게 자세한 학대행위 서술 등이 발견되고, 허위정보가 제공되거나, 피해자의 이름을 붙인 사건을 지칭하는 등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71)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창호·정의철, 201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양한 언론보도로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점은 고무적인 변화로 보이나, 이는 피해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위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언론보도 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언론사 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피해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권고기준 준수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가 언론보도기준을 정하여 이를 언론사에 권고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①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인권보도준칙⁷²⁾을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도 보완·활용할 수 있다는 점, ② 피해

72) 2011년 언론의 인권보도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위해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함.[전문과 총강 포함 분야별(제1장:민주주의와 인권, 제2장:인격권, 제3장:장애인 인권, 제4장:성평등, 제5장: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제6장:노인 인권, 제7장:어린이와 청소년 인권, 제8장:성적 소수자 인권, 제9장:북한이탈주민 및 북한 주민 인권)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7장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

1.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는다.
 - 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 나. 따돌림, 학교폭력, 체벌, 인터넷 중독 등을 다룰 때 어린이와 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한다.
2.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한다.
 - 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선정적·폭력적 묘사를 자제한다.
 - 나. 주변의 도움이나 후원을 받는 경우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다. 범죄 사건을 재연할 경우 아동을 출연시키지 않는다.
 - 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상황과 관련한 사진과 영상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아동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보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⁷³⁾에서도 이미 금지하고 있다는 점, ③ 방송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사후심의를 하고 있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아래참고)⁷⁴⁾, ④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 제21조(인권보호)** ① 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출신지역·방언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 ④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취재·답변강요·유도신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1조의2(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 ① 방송은 범죄사건 피해자의 이름, 주소, 얼굴, 음성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방송은 객관적 근거 없이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방송은 범죄사건의 제보자, 신고자, 고발인, 참고인, 증인 및 범죄사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개인의 인적사항 및 단체의 명칭·주소를 동의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7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4) 이와 관련하여 한국방송협회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에서는 개정안을 공감할 수 있으나, 이미 다른 매체와 비교하여 여러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또 다른 규정이 생기는 것은 과도한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방송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제21조의4(어린이 학대 사건보도 등) ① 방송은 어린이 학대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어린이 학대행위가 담긴 영상·음향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어린이 학대 사건을 다룰 때에는 가족 유형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26조(생명의 존중) ① 방송은 살인, 고문, 사형(私刑), 자살 등 인명을 경시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불가피하게 인신매매, 유괴, 성매매, 성폭력, 노인 및 어린이 학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내용전개상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상하는 장면을 다룰 때에는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참고로, 이와 유사한 입법례로는 재난방송 시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를 협조요청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있고⁷⁵⁾, 해외입법례로 영국에서는 「Communications Act 2003」에서 OFCOM(Office of Communication)으로 하여금 TV나 라디오 프로

75)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
2. 재난지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3.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회견 등(이하 “인터뷰”라 한다)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5.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
6. 재난방송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할 것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2(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사건 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램에 아동을 보호하고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등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⁷⁶⁾).

76) Part 3 Television and Radio Services

- Chapter 4 Regulatory provisions

- Programme and fairness standards for television and radio

319.OFCOM's standards code

(1) It shall be the duty of OFCOM to set, and from time to time to review and revise, such standards for the content of programmes to be included in television and radio services as appear to them best calculated to secure the standards objectives. (OFCOM은 수시로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한 기준이 목적에 가장 적합한지 검토하고 개정하여야 한다.)

※ 외국입법례 소개, '아동학대 언론보도기준 마련', 2017. 국회도서관

14. 아동학대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등 (제11103호 조오섭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 개정안은 아동학대 실태조사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재량규정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배치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u>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u> <u><신설></u>	제11조(실태조사) ① ----- ----- ----- ----- ----- ----- <u><단서 삭제></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매년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밖의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①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④ (생략)

<신설>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④ 제1항 및 제2항에-----실태조사의-----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① -----

-----두어야 한다.

② -----

-----전담공무원의
정원, 배치기준 및-----대
통령령으로-----.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의6(아동학대전담경찰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아동학대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u>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관할 구역의 아동 수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단서 삭제> ③ 국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	---

나. 보건복지부 의견

- ☐ (아동학대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현행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도 아동학대 부분이 포함되고, 「아동복지법」에 따라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중임.
- ☐ (아동학대전담경찰관 근거 마련) 현재 경찰청은 아동·노인학대 및 가정폭력 분야를 함께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을 운영 중으

로, 법체계를 고려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통해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배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 전담인력(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를 기 추진중으로, 추가적인 의무배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지자체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이상 의무 설치) 모든 시·군·구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아동학대 발생 규모,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다. 검토의견

(1) 아동학대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현행	개정안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u>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u> 〈신설〉	제11조(실태조사) ① ----- ----- ----- ----- ----- ----- ----- 〈단서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매년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밖의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 ----- ----- ----- ----- ----- ④ 제1항 및 제2항에-----실태조사 의-----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연령대 별 발달상황과 아동이 처한 환경에 대한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실시 하여야 하며⁷⁷⁾, 해당 결과는 정책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되고 있음.

<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개요 >

- (목적)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토대로,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아동정책 수립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조사영역) 건강, 발달 및 교육, 관계, 양육 및 돌봄, 여가 및 활동, 안전 및 위험행동, 지역사회 환경, 물질적 환경, 주관적 웰빙 등 9개 영역 조사
- (조사방법) 5년 단위로 실시하며, 전국 만18세 미만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가구방문 조사
- (소요기간) 약 10개월('18년 실태조사 기준)
 - * 통계설계, 조사, 통계처리 및 분석 등
- (소요예산) 3.5억('18년 실태조사 기준)

- 개정안은 아동종합실태조사와 별개로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77) 「아동복지법」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아동학대 사례발생 증가를 계기로 아동학대·재학대 예방·방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아동학대 실태에 대한 주기적 조사·점검을 통해 이를 아동학대 방지정책 등에 대한 시의성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다만, 아동학대 현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18년까지 매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행해 오다가, 「아동복지법」이 개정⁷⁸⁾되어(2017.10.24. 개정, 2019.1.1. 시행) 2019년부터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차보고서에는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아동학대 사례 분석,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동 연차보고서를 보완하여 그 취지를 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8) 「아동복지법」

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2.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3. 아동학대 사례 분석
4.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아동학대전담경찰관 근거 마련

현행	개정안
<신설>	제22조의6(아동학대전담경찰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아동학대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⁷⁹⁾로 하여금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아동학대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현재 일선 경찰서에서 가정폭력과 함께 아동·노인학대 등에 대한 예방 및 수사연계 업무 등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가 일부 담긴 것으로 이해됨.

□ APO는 가정폭력·학대범죄에 대한 예방, 수사 연계, 피해자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경찰관으로서, 2016년 발대하였으며 각 지방청별 전담인원은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오고 있음.

79) 대한민국은 중앙 정부가 직접 경찰력을 관리하는 국가경찰제도로 운영되어오다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가 시행(2021.7.1. 시행)되었음.

< 학대에방경찰관(APO) 개요 >

- (목적) 가정폭력·학대 범죄에 대한 예방·수사 연계·피해자 보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의 현장 추진체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경찰
 - (주요업무)
 - 전수합동조사: 가정폭력·학대 신고사건에 대한 재발 위험성, 보호조치 필요성 등 검토
 - 사후모니터링: 재발우려가정(여성·아동·노인) 지정 및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 유관기관 협업: 경찰-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間 현장 동행출동 및 정보 공유,
 - * 1366센터·가정폭력상담소·학교 등 합동, 피해자 보호 사례회의 실시
 - 시설점검·교육: 교육부·복지부 등 유관부처·지자체 합동, 보호시설 점검 및 인식전환 교육
 - 복지서비스 연계: 가·피해자 심리상담, 경제·의료·법률 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 (출동 시 세부대응 매뉴얼)
 - 가정폭력 신고 접수 시 지역경찰이 출동 및 초동조치를 수행하며, 학대에방경찰관은 신고 다음날 피해자를 대상으로 콜백(call-back)하고, 필요한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활동을 수행함
 - 다만, 주간에 발생한 응급 아동학대 사건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동행 요청 접수 시 학대에방경찰관은 지역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학대 사안을 확인하고 피해 아동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 (학대에방경찰관 자격요건)
 - 심층면접·여론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성인지력 등 여성·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취지에 부합하는 인성을 갖춘 자를 선발, 전문성 자격*을 충족한 자는 우선 선발을 고려
 - * △ 아동·청소년·사회복지·심리상담 관련 학위·자격증 보유자 △ 경찰인재개발원·교육센터 전문교육 이수자 △ 여성청소년 기능 실무 경력자 등
 - (가정폭력 등에서 APO가 이행 가능한 권한)
 - 「가정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경찰관에게 주어진 권한은 현장 출입·조사,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신청 등이 있음
 - 다만, 당해 조치들은 초동조치(지역경찰) 또는 수사(여청수사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들로 학대에방경찰관이 직접 수행하지는 않으며, APO는 신고 다음날 모든 가정폭력·학대 사건을 검토하고 피해자를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등 보호·지원활동을 수행함
- (현장 출입·조사) 「가정폭력방지법」 제9조의4,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 (응급조치)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 (임시조치 신청)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 지방청별 학대예방경찰관 배치현황('16년~'20년) >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정원)	349	411	529	603	669
서울	62	62	87	99	107
부산	30	31	39	42	42
대구	21	21	28	34	34
인천	17	18	27	32	32
광주	11	11	14	15	15
대전	12	13	19	20	20
울산	9	9	13	15	15
세종	-	-	-	2	3
경기남	55	62	87	110	119
경기북	16	23	31	38	40
강원	12	18	21	22	29
충북	12	18	21	22	24
충남	16	24	27	26	28
전북	13	18	18	19	24
전남	14	22	25	26	36
경북	18	25	27	32	44
경남	24	29	35	36	44
제주	7	7	10	13	13

□ 아동학대 발생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그 원인과 유형은 복잡적이고 다양⁸⁰⁾하여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대응인력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고, 현재도 일선 경찰서에는 APO가 배치되어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APO 운영의 안정성⁸¹⁾과 전문성 향상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수사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음.

□ 다만, 이는 경찰청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 부처 간 충

80) 가정폭력, 경제문제(무직, 빈곤, 감당 못할 부채), 범죄경력, 불안정한 혼인형태, 정신병력(우울증, 자해 및 자살시도, 알코올문제), 불우한 어린 시절(피학대경험, 가정폭력, 빈곤 등), 지지체계 부족 등(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췌)

81) 법적 근거 마련으로 예산지원 및 인력운용이 보다 수월할 수 있음.

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현재 경찰청은 APO 제도의 경우 내부지침 등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법률에 규정할 실익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아울러, 법적근거를 두더라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업무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보호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그 근거를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배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

현행	개정안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①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u>둘 수 있다</u> .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① ---- ----- ----- ----- ----- ----- <u>두어야 한다</u> .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u>그</u>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u>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u> 정한다.	② ----- ----- ----- <u>전담공무원의 정원, 배치기준 및 -----대통령령으로</u>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배치에 관한 규정을 재량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⁸²⁾.

□ 지역별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통일적·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여 보다 효과적인 아동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바람직하나,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권한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영역으로

82)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위임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서, 지역별로 재정상황 등의 여건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을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강행규정 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조직운영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상당한 재정부담을 수반하고, 인력과 예산 등 관련 인프라도 전제될 필요가 있으므로, 재정상황 및 시·군·구 별 아동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지방자치단체 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이상 의무설치

현행	개정안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u>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아동보호전문기관을 관할 구역의 아동 수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 <u>삭제></u> ③ 국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⑤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국가의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임⁸³⁾.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업무 등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였으나,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20.10.8. 부터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업무 등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상담·치료,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⁸⁴⁾.
- 2020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는 71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음. 아동보호전문기관 대부분(67개/71개)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각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1,218명(2020.12월 말, 상근 기준)으로, 1개소당 정원은 17명⁸⁵⁾임.

83) 「아동복지법」 (2020.10.8. 시행)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84) 「아동복지법」 (2020.10.8. 시행)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삭제
2. 삭제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삭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85) 관장1, 상담원14, 심리치료사1, 사무원1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 전국 71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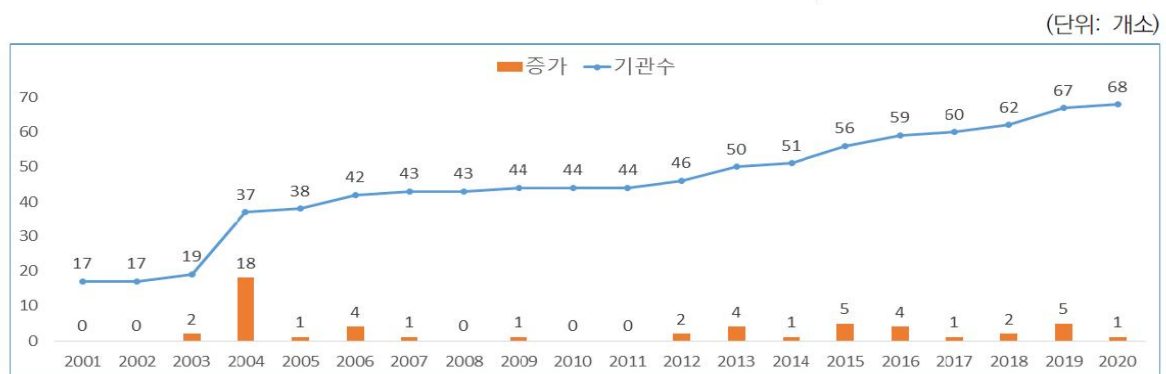
(2020. 12월말 기준)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71	9	4	3	4	2	2	2	1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	4	3	4	4	4	4	4	2

* 자료: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1년 17개소에서 2020년 6월 말까지는 68개소로 증가하였으나, 2004년 18개소 증설을 제외하면 증가세는 점진적인 양상을 보임.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은 2005.11월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되었으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사업 확대가 저조하여 2015년부터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한 바 있음.

[그림 2]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추이(2001~2020)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 p.177-178. 재구성

- * 자료: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p25,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정책토론회 자료집 발췌

-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함. 다만, 동 조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

려하여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⁸⁶⁾.

이에 따라 현재는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인접 시·군·구를 통합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음(붙임 참고).

□ 개정안은 동 조항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각 시·도 및 시·군·구 별로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려는 것임.

□ 현재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71개소로 전국 226개⁸⁷⁾ 시·군·구의 3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인바, 행정구역이 넓거나 도서 지역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고 꾸준히 증가하는 아동학대 건수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최근 6년 간 아동학대 관련 일반 통계 >

(단위: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
전체 신고건수	19,203	29,671	34,166	36,416	41,389	42,251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	16,651	25,878	30,923	33,532	38,380	38,929
최종 학대 판단건수	11,715	18,700	22,367	24,604	30,045	30,905
사망사건 발생건수	16	36	38	28	42	43

* 자료: 보건복지부(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86)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87)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2019.12.31. 현재), p4, 행정안전부

□ 다만, 일률적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당한 재정부담을 수반하고, 효율적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별 아동 수⁸⁸⁾의 편차를 고려한 통합·운영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일률적·일시적으로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는 것보다는 재정상황 및 시·군·구 별 아동 수, 아동학대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지원 현황 >

구분	전체	1개소 평균
예산액 (2020년)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22,074백만원(국비 기준) (신규설치 3개소 포함)	6억 3,5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인건비) 17명, 30,570천원 - (사업비) 27,320천원 - (운영비) 88,430천원

*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조례가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체계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완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설치·운영 비용에 대한 국가의 보조 규정에 대해서도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88)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시·군·구별 아동수는 2019년 기준 최대 201,220명(용인), 197,840(수원)부터 최소 1,516명(군위군), 울릉군(834명) 순으로 편차가 나타남.

붙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현황(71개소)

연번	시도명	기관명	관할 시군구
1	서울 (9)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강동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관악구,동작구
2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동대문구,종로구,성동구,광진구
3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서구,양천구
4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종로구,은평구,강북구
5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6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도봉구,성북구
7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서대문구,마포구,용산구
8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강동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관악구,동작구
9		서울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노원구
10	부산 (4)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동구,서구,사하구,영도구,동래구,남구,연제구,부산진구
11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금정구,해운대구,수영구,기장군
12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북구,사상구,강서구
13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동구,서구,사하구,영도구,동래구,남구,연제구,부산진구
14	대구 (3)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남구,수성구
15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달서구,달성군
16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북구,서구
17	인천 (4)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
18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평구,계양구
19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남동구,연수구
20		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구,강화군
21	광주 (2)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구,광산구
22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북구,동구,남구
23	대전 (2)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중구,대덕구
24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구,유성구
25	울산 (2)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동구,북구
26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남구,울주군
2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세종특별자치시
28	경기 (14)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과천시,군포시,의왕시
29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포천시
30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수정구,중원구,분당구,광주시,하남시,양평군
31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일산동구,일산서구,덕양구,파주시
32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김포시,원미구,오정구,소사구
33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화성시,오산시
34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구리시,남양주시,가평군
35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단원구,상록구
36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기흥구,수지구,처인구,이천시,여주시
37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시흥시
38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평택시,안성시
39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40		경기광명아동보호전문기관	광명시
41		안양아동보호전문기관	만안구,동안구

연번	시도명	기관명	관할 시군구
42	강원 (4)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춘천시,화천군,홍천군,양구군,철원군
43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릉시,양양군,속초시,고성군,인제군
44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원주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
45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정선군,태백시,동해시,삼척시
46	충북 (3)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청주시,진천군,증평군,음성군
47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주시,제천시,단양군
48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괴산군,영동군,옥천군,보은군
49	충남 (4)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동남구,서북구,아산시,당진시
50		충청남도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금산군,공주시,논산시,계룡시,부여군,서천군
51		충청남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군,청양군,홍성군,보령시,서산시,태안군
52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산시, 당진시
53	전북 (5)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완산구,덕진구(전주사무소관할),완주군,진안군,정읍시
54		전라북도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익산시
55		전라북도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군산시
56		전라북도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남원시
57		전라북도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
58	전남 (4)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곡성군,순천시,구례군,광양시,보성군,고흥군,여수시
59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영암군,강진군,목포시,무안군,신안군,해남군,완도군,진도군
60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영광군,장성군,담양군,화순군,나주시,함평군,장흥군
61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화순군,영광군,장성군,담양군,장흥군,보성군
62	경북 (4)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산시,청도군,군위군,의성군,영천시,경주시
63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문경시,영주시,봉화군,예천군,안동시,영양군
64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송군,영덕군,울진군,남구,북구,울릉군
65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고령군,칠곡군,성주군,구미시,김천시,상주시
66	경남 (4)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양산시,밀양시,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창녕군,의령군,함안군,고성군,의창구,성산구,진해구,통영시,거제시,합천군
67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진주시,사천시,산청군,하동군,남해군,거창군,함양군
68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김해시
69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창원시
70	제주 (2)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시
71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

* 자료: 보건복지부

* 음영은 시군구별 1개소 설치된 지역임

15.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추가(제11428호 김병욱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취업제한 결격사유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의 <u>장으로</u> 채용될 수 없다.	제54조의2(결격사유) ----- ----- --- <u>장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5.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6.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삭제>

<u>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u>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

나. 보건복지부 의견

- ☐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경우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여, 아동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에 공감하나, 개정안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통합하고 있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검토의견

- ☐ 「아동복지법」의 개정(2021.6.30. 시행)⁸⁹⁾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시

89) 「아동복지법」

제54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취업제한 결격사유가 신설되었음.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 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 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그동안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제35조 및 제35조의2⁹⁰⁾에 따라 아동학대, 성폭력 등의 범죄 전력자에 대한 결격

90)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시설의 장) 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유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아동복지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⁹¹⁾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⁹²⁾에 중독된 사람을 각각 결격사유로 추가하였음.

□ 개정안은 이와 같은 결격사유로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추가하고, 확정형(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유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근무가 제한되는 기간(각각 20년, 15년, 10년)을 각각 규정하려는 것임.

□ 현행 「아동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인용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를 결격사유로 명시할 경우 중복되는 측면은 있으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취지와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종사자 등에 대해 적용하는 결격사유 규정(붙임참고)과 유사하게 이를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9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9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다만, 개정안은 확정형에 따른 유예기간은 각각 달리 정하여 신설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공익적 필요성과 학대자의 침해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비교형량한 논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인용하여 각각 구분되어 규정하고 있던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하나의 항으로 통합하면서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시설장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⁹³⁾, 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 간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규제가 각각 다른 데 따른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성, 당초 결격사유를 구분하여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아동관련 시설종사자 등 결격사유 유사입법례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

93) 「사회복지사업법」은 종사자(제35조의2)보다 시설장(제35조)에 대해서 보다 강화된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있음.

- 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아이돌봄 지원법」

-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개정안의 내용

- | 현행 | 개정안 |
|--|---|
|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

<u>운</u>
<u>영하여야 한다.</u> 이 경우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u>운영하여야 한다.</u> |
| 1. ~ 6. (생략) | 1. ~ 6. (현행과 같음) |
| ② ~ ④ (생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신설> | ⑤ <u>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150세대 이상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u> |
| ⑤ (생략)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나. 정부부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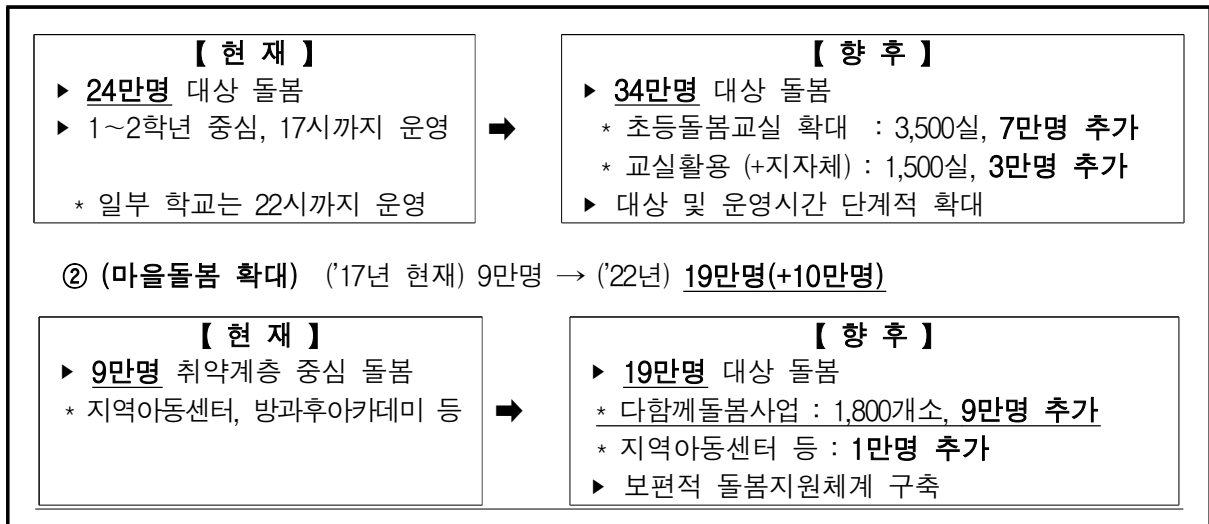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 다함께돌봄센터의 의무적인 설치·운영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대응이 어렵고, 각 부처의 다양한 돌봄사업의 유기적인 연계 및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인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검토의견

- 2018.4.4.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을 통해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초등돌봄 이용 아동수를 2017년 당시 33만명에서 2022년까지 53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대책을 발표함.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 주요 내용 >

- (추진방향)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국고 지원 확대
학교-지자체 협력 ☞ 빈틈없는 돌봄 체계 구현
- (공급목표) '17년 현재 33만명 → ('22년) 53만명
- (돌봄 공급 계획)
- ① (학교돌봄 확대) ('17년 현재) 24만명 → ('22년) 34만명(+10만명)



* 자료: 보건복지부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에서 각각 10만명의 돌봄아동을 추가·확대하려는 것으로, 이 중 마을돌봄의 경우 기존 지역아동센터에서 추가 1만명을,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신규 9만명의 돌봄을 수행하려는 계획임.

당초 2022년까지 다함께 돌봄 센터 총 1,800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1.8월 현재까지 총 555개소가 설치되어 확충목표 대비 센터 증가 추이는 다소 더딘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동 계획을 수정하여 202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센터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함.

<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현황 >

총 설치 개소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8월까지
555개소(누적)	17개소	173개소	424개소	555개소

* 자료: 보건복지부

<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계획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 편성 기준, 누적)	17개소	167개소	517개소	923개소	1,373개소 * 정부예산안 기준

* 자료 : 보건복지부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경과 >

- (근거마련) 아동복지법 개정하여 사업 근거 마련('19.1.15. 개정, '19.4.16. 시행)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하여 종사자 자격기준 및 면적 등 설치기준 마련('19.4.16 개정, 시행)
- (아파트 활용) 아파트 공간 활용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
 - LH 신혼부부 특화단지 설치 시 다함께돌봄센터 포함('21~'22년, 19개 지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기준 완화('20.11.10.~, 주민동의 2/3→ 1/2)
 - 신축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추진
 - * (설치의무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부) 개정 완료('21.1.12., 개정 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주택단지부터 적용)
 - (운영의무화) 「아동복지법」(복지부) 개정 추진 중(상임위 계류 중)
- (어린이집 활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 내 유희공간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가능('20.9.1.~)
- (공공시설 활용) 다양한 공공시설 활용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19년 95건, '20년 44건, '21년 24건)
 -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추진('20년~)
- (운영비 지원) '20년부터 운영비 월 30만원 신규 지원
- (수탁기준 완화) 학교법인, 장학재단 등도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자 자격기준 완화('20년~, 「민법」 상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빅데이터) 지자체 담당자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내 돌봄 수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21년~, 행안부 협조)

□ 개정안은 설치목표 대비 주춤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 확충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접근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우선,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의무화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확충으로 보다 촘촘하고 공백 없는 지역수요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강행규정으로의 변경에 따른 일률적인 다함께돌봄센터 증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당한 재정부담을 수반하고, 인력과 예산 등 관련 인프라도 전제될 필요가 있으므로, 재정상황, 유휴공간 확보 가능성 및 시·군·구 별 아동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다음으로, 150세대 주택단지에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려는 것과 관련해서 유사입법례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사례에 따르면⁹⁴⁾, 아동수 감소로 전체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소수와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⁹⁵⁾, 특히 공동주택 내 설치를 의무화('19.9.25.)한 이후 그 증가세가 현저히 확대된 점을 볼 때⁹⁶⁾, 다함께돌봄센터 또한 이와 유

94)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전체) ('17) 40,238개소 → ('18) 39,171개소 → ('19) 37,371개소 → ('20) 35,352개소 → ('21.6월) 33,624개소 (국공립) ('17) 3,157개소 → ('18) 3,602개소 → ('19) 4,324개소 → ('20) 4,958개소 → ('21.6월) 5,197개소 (국공립 이용률) ('18) 14.1% → ('19) 17% → ('20) 20.4% → ('21.6월) 23.0%

96) (개소수) ('19.9월) 4,137개소 → ('21.6월) 5,197개소
(이용률) ('19.9월) 16.8% → ('21.6월) 23.0%

사하게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⁹⁷⁾.

다만,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⁹⁸⁾을 개정('21.1.12)하여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로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하였는바, 이에 따른 효과를 우선 살펴본 후 확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개정 추진 경과 >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 심사	국무회의	시행일
'20.5월	'20.7.10. ~ 8.19.	'20.8월	'20.9월	'20.9월말	'21.1.12 (공포일)

*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개정안은 다함께돌봄센터를 관할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지역별로 센터의 균형 있는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97) 다함께 돌봄 센터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사례와 같이 해당 입주민들이 다함께 돌봄 센터의 설치·운영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해야 한다고 보이나, 이를 위해서는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도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임.

9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 2021년 8월 기준 지방자치단체별 설치현황을 보면, 지역별로 설치를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는데, 주로 서울·경기에 집중된 경향이 있으며, 대구·광주·대전·세종·제주의 경우 2~6개소 설치에 그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별 다함께 돌봄 센터 운영 개소수 >

(’21.8월말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계	181	40	2	15	5	6	19	5	120	23	21	21	28	17	31	19	2	555
’21년	53	12	-	3	2	1	3	-	34	5	2	3	2	2	5	3	1	131
’20년 (누적)	128	28	2	12	3	5	16	5	86	18	19	18	26	15	26	16	1	424

* 자료: 보건복지부

□ 이는 지역별 여건 및 수요에 따른 순차적 설치에 따른 것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수 등에 따른 지자체별 편차는 다소 불가피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나, 향후 균형있고 형평성 있는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센터가 적정하고 고르게 설치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17. 자립지원기본계획 수립 등(제11558호 최연숙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주거·생활·교육·취업에 관한 자립지원의 내용을 예시를 들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7조의2(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립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자립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u>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u>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u>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u> <신 설> <신 설> <신 설> 2. ~ 5. (생략) ② (생략)	<u>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 5.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자립지원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8조(자립지원) ① ----- -----제37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기본계획에 따라----- -----. 1. -----임대주택의 공급 등 주거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급 등 생활지원 1의3. 자립에 필요한 교육훈련 또는 교육비 지급 등 교육지원 1의4. 자립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나. 보건복지부 의견

- (자립지원기본계획 수립)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자립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자립지원기본계획 수립 필요성에 공감함.

□ (자립지원 내용 구체화)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에 관한 지원강화 취지에 공감하나, 기본계획 수립은 당시의 사회적 여건 및 변화 등 전반을 반영하여야 하는 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다양한 정책환경 변화 및 기존 제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음.

다. 검토의견

□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⁹⁹⁾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시행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¹⁰⁰⁾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붙임 참고).

□ 이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아오던 보호대상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은 부모의 보살핌과 지원을 받아오던 일반아동에 비해 자립 기반이 취약하고, 준비기간도 짧아 실제 많은 보호대상아동이 자립 후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겪고 있음.

- 최근 실시한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¹⁰¹⁾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월 평균소득은 127만원으로 최저임금과 52

99)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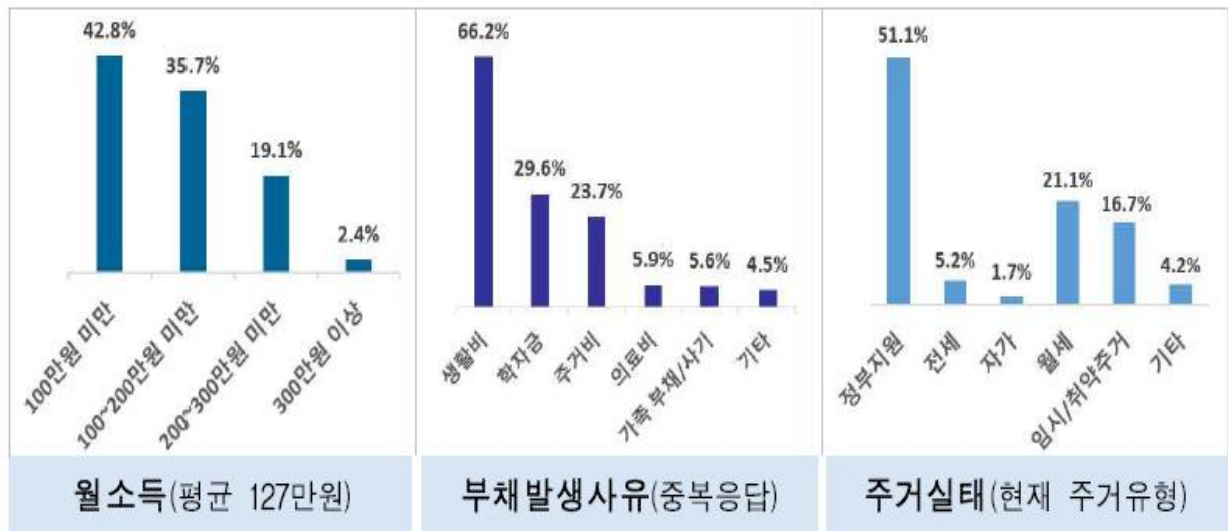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100)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01) 조사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은 3,104명으로, 남자가 1,461명(47.1%), 여자가 1,643명(52.9%)임.

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생활비, 주거비, 학자금 등으로 인해 부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대다수는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51.1%)에 거주하거나, 임시·취약 주거에 거주하는 경우(16.7%)도 다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종료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개인별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동의 입장에서는 적합한 지원을 제때에 받기 어려울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효과적인 자립체계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성인으로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기존 「아동복지법」 제7조¹⁰²⁾에 따른 아동정책기본 계획 등을 통해 수립·시행하던 자립지원 정책과 유사·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될 수 있으나¹⁰³⁾, 개정안은 해당 아동정책기본 계획에 포함하여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자립지원의 내용을 일부 명시(안 제38조)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보건복지부는 현재 아동·청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계획도 함께 수립 중이라고 설명하는바¹⁰⁴⁾,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아동·청년 기본계획 등을 보다 포괄적으로 수립하거나 자립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보다 확대함

102) 「아동복지법」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03) 보건복지부는 현재 아동·청년 정책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계획도 함께 수립 중이라는 설명임.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p62~64, 보건복지부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p47~48, 국무조정실

104)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3.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2.취약아동 지원강화-보호대상 및 보호종료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사업 확충)

으로써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제도

1. 보호대상아동 현황

- 2019.12월 말 기준 보호대상아동은 총 25,022명이며, 2020년도에는 2,368명의 아동이 보호종료 되었음.

<보호대상아동 현황>

연 도	합 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2020년	24,364명	11,394명	3,047명	9,923명
2019년	23,564명	10,585명	2,645명	10,334명
2018년	25,113명	11,100명	2,872명	11,141명
2017년	27,583명	12,789명	2,811명	11,983명
2016년	29,343명	13,689명	2,758명	12,896명
2015년	30,365명	14,001명	2,636명	13,728명

* 자료: 보건복지부

<연도별 보호종료아동 현황>

연 도	합 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2020년	2,368명	827명	168명	1,373명
2019년	2,587명	992명	172명	1,423명
2018년	2,606명	1,065명	192명	1,349명
2017년	2,593명	1,034명	153명	1,406명
2016년	2,703명	1,042명	139명	1,522명
2015년	2,677명	980명	140명	1,557명
2014년	2,172명	1,008명	82명	1,082명

* 자료: 보건복지부(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

2.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제도

○ 보호종료 조치

-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함(「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
- 다만,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①대학에 재학중이거나 ②직업 관련 교육

•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③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⑨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⑩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8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9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귀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39조).

「아동복지법」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자립지원 조치 및 대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자형성 지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아동복지법」 제38조), 자립지원대상 아동은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임(「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자립지원) ① 생략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대상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3.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아동자립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을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2020년 12월 말 기준 서울, 부산 등 8개 시·도에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 중임(「아동복지법」 제40조).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현황 >

(2021년 2월 말 기준)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개소	○	○	X	X	X	X	X	X	○	○	X	○	X	○	○	X	○
인력	3	9	-	-	-	-	-	-	5	6	-	2	-	6	2	-	1

* 자료 : 아동자립지원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41조).
-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1개 부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됨.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회의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절차 강화 (제11561호 최연숙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보호조치함에 있어 해당 아동이 만 6세 미만이거나 발달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보호조치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보호조치) ① ~ ④ (생략)	제15조(보호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 ----- ----- ----- ----- ----- -----인 경우, 보호대상아동이 6세 미만이거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⑪ (생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나. 보건복지부 의견

-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 등의 경우 조사 시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에 공감하나, 법률을 통한 보호자 의견청취 의무를 배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다. 검토의견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꾸준한 예방노력과 대응체계 마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아동학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충격을 더하고 있음.

< 최근 6년 간 아동학대 관련 일반 통계 >

(단위: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
전체 신고건수	19,203	29,671	34,166	36,416	41,389	42,251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	16,651	25,878	30,923	33,532	38,380	30,905
최종 학대 판단건수	11,715	18,700	22,367	24,604	30,045	30,905
사망사건 발생건수	16	36	38	28	42	43

* 자료: 보건복지부(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발생사실이 은폐되기 쉬우며, 특히 의사표현이 어려운 어린 아동일수록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음.

< 아동학대 발생장소 >

(단위: 건, %)

발생장소		건수	비율
가정 내	아동 가정 내	23,270	77.5
	학대행위자 가정 내	613	2.0
	소계	23,883	79.5
기타	학교	2,277	7.6
	친척집, 이웃집, 아동복지시설 등	3,885	12.9
	소계	6,162	20.5

* 자료: 보건복지부(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보호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¹⁰⁵⁾. 다만,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듣지 않고 보호조치할 수 있음.

□ 그러나 아동이 어리거나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표현이 서

105)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②~④ 생략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틀러 본인의 의견을 반영한 보호조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자의 의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아동학대 등의 발생사실이 은폐된 채 가정으로 복귀하여 재학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시 해당 아동이 만 6세 미만이거나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해당 아동을 보호조치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아동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재도 보호자가 아동의 분리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판단재량을 통한 보호조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¹⁰⁶⁾, 보호자의 대부분은 부모로

106)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②~④ 생략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서, 이들의 의견청취를 일률적으로 배제한 보호조치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장애아동의 경우, 아동과 학대행위(의심)자 간 관계를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표정·태도 등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주목하여 관찰하도록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21.4월)을 배포하여 그 절차를 안내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9.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유형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등 추가(제11626호 강선우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유형으로 보호대상아동이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지원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6. (생략) <u><신설></u>	제15조(보호조치) ①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44조의2에 따른 방과 후 돌봄서비스,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연계·지원하는 것
② ~ ⑪ (생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나. 보건복지부 의견

- 양육이 서툰 가정에 대해 방과후 돌봄과 같은 서비스의 이용을 강제하여 아동의 돌봄공백과 그에 따른 방임가능성을 방지할 필요성

에 공감하나,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의 경우 산모의 산후회복을 위한 지원 서비스로 아동의 보호를 위한 돌봄서비스와는 목적과 범위가 다른 것으로 보여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다. 검토의견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긴밀하게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보호조치하여야 함.

개정안은 이러한 보호조치 유형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및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연계·지원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육아나 양육이 서툰 보호자로 인해 아동이 방치되거나 학대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돌봄서비스 개요 >

□ 방과 후 돌봄서비스

- (근거마련) 아동복지법 개정하여 사업 근거 마련('19.1.15. 개정, '19.4.16. 시행)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하여 종사자 자격기준 및 면적 등 설치기준 마련
- (목적)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 (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6세~12세(초등학생) 아동
 - *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 우선 입소대상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음
- (운영시간) 표준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
 -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시간 조정 가능
 - * (표준서비스 운영시간) 학기 중: 14~19시 / 방학 중: 9~18시

- (운영방식) 지자체 직영, 위탁운영 등 다양한 형태 가능
 - * 수탁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공간) 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서비스 공간 확보
 - 공공시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 접근성 높고 안전한 시설 등을 리모델링하여 활용
- (이용방법)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후 방문상담
- (이용료) 프로그램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월 10만원(아동 1인당) 범위내 센터별 시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 결정
 - 급·간식 제공시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가능
- (예산규모) '21년 총 예산규모 37,219백만원
- (설치현황) '21.6월 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518개소 설치·운영 중

□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 (사업목적)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 (예산) '21년 113,442백만원(국비), 지자체 보조율(50/70/80%)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 * '21년 4인가구 기준 월소득 5,852천원 이하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제공자 등록 기관('20.12기준 1,054개소)
- (제공인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과정*이수자('20년 10,981명)
 - * 신규자 60시간(이론28, 실기32), 경력자 40시간(이론15, 실기35), 보수교육 8시간
- (지원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25일
 - * 바우처 이용은 출산 후 60일 이내 이용
- (서비스내용)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감염 예방 및 관리 등),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 아이돌봄서비스

- (목적) 12세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가정 등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시설보육 사각지대 보완, 자녀 양육부담 경감, 중장년여성 일자리 창출
- (근거) 아이돌봄 지원법('12. 8.17 제정)
- (체계) 시도별 광역거점기관, 시군구별 서비스제공기관(총 227개소, '20년)을 지정하여 아이돌보미(근로계약 체결)와 이용가정 연계(돌봄 제공)
- (사업내용) 시간제 돌봄(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 돌봄(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 취학전·취학후 구분, 1회 2시간 이상 이용, 연 지원시간 840시간 한도
 - * (서비스 유형) 기본형, 종합형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
 - (종일제) 최소 월 60시간 이상 이용 필요, 월 정부지원시간 200시간 한도
- (아이돌보미 현황)

(단위 : 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9,377	20,878	23,675	24,677	24,469

* 자료: 보건복지부

□ 현재는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의 연계·이용을 권유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적극적·선제적인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아동학대·재학대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보호조치의 유형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서비스 연계이용이 가능한 돌봄서비스의 범위, 돌봄서비스 기관의 입소(수용)여력, 비용지원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간 충분한 선행협의를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의무지정 등 (제11751호 임호선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시·도 및 시·군·구별로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1개소 이상 지정하도록 하되,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되도록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시군구마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의무화하여 전담의료기관 제도를 전국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경우 그 지정에 관해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 및 제도적 유인책을 함께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경상북도)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공립병원,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시·군도 있으며, 보건소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는 강제 조항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대한의사협회) 전담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행정, 시간,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대한병원협회)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의무지정으로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신속한 초기 진료 등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원활한 지정을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확보에 대한 제도적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다. 검토의견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꾸준한 예방노력과 대응체계 마련에도 불구하고

하고 해마다 아동학대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충격을 더하고 있음.

< 최근 6년 간 아동학대 관련 일반 통계 >

(단위: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
전체 신고건수	19,203	29,671	34,166	36,416	41,389	42,251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	16,651	25,878	30,923	33,532	38,380	30,905
최종 학대 판단건수	11,715	18,700	22,367	24,604	30,045	30,905
사망사건 발생건수	16	36	38	28	42	43

* 자료: 보건복지부(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 정부는 학대피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치료·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음(2018.4월 시행)¹⁰⁷⁾.

□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가족·친족이나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의 요청에 따라 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실시하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107) 「아동복지법」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의료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피해아동·가족·친족,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 판사 또는 가정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2. 신체적·정신적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의료기관 등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2020년 12월까지 전담의료기관은 전국에 1개소에 불과하였으나, 전담의료기관 시설확충 필요성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지정독려로 현재는 전국에 171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음¹⁰⁸⁾.

< 지자체 전담의료기관 현황('21.7.31. 기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8	4	-	5	3	9	9	1	14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8	19	10	24	13	8	11	5	171

- 개정안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 별로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의무화하되,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전담의료기관의 촘촘한 설치를 통해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료를 기대할 수 있고¹⁰⁹⁾, 학대피해아동은 신체적 외상뿐만 아니라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복합적으로 겪는 경우가

¹⁰⁸⁾ 한편, 다수의 지역은 의료기관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MOU 체결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치료를 지원 중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료기관 MOU 체결 현황(21.3.기준)>

시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경북	경남
기관수	12	40	12	15	14	16	2	12	9
시도	대구	울산	부산	전북	전남	광주	세종	제주	총계
기관수	10	12	14	10	11	2	2	6	199

¹⁰⁹⁾ 아동학대전담 의료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우선진료가 전제될 필요가 있음.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담과 심리치료 등도 전문적·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전담의료기관의 의료진을 통한 아동학대 여부 확인을 통해 아동학대 발견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체계적·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의료기관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현재 전담의료기관 지정방식은 신청주의로서 이를 기피할 경우 참여기관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정기준과 함께 참여기관 유인책 등을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음¹¹⁰⁾.

둘째, 전담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적 치료 외에도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 필요성 등이 강조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과 전문인력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인프라가 전제될 필요가 있음¹¹¹⁾.

셋째,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는 인력, 인프라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110)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 5억원을 반영함(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

111)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분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면밀한 점검과 신속 대처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 지정이 효율적일 것이나, 의료 인프라는 지역별 편차가 있으므로 종합병원 이상 규모의 지정이 어려운 지역은 보건소 및 개인병원 등을 복수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1.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인 범죄 경력 조회 실시근거 마련(제11947호 서영석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 3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54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제54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3년에 1회 이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에 해당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의견

□ (보건복지부) 현행 「아동복지법」 제54조의2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행위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채용 이후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채용 후 형이 확정되는 문제 발생 시 대비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다. 검토의견

□ 「아동복지법」의 개정(2021.6.30. 시행)¹¹²⁾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취업제한 결격사유가 신설되었음.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

112) 「아동복지법」

제54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 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그동안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제35조 및 제35조의2¹¹³⁾에 따라 아동학대, 성폭력 등의 범죄 전력자에 대한 결

113)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시설의 장) 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격사유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아동복지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것임¹¹⁴⁾.

□ 다만, 범죄경력조회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법
률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취득·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현행 「아동복지법」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1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을 각각 결격사유로 추가하였음.

범죄경력조회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특히, 채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점검을 태만히 하는 경우 종사자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 이에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일부의 입법례가 범죄경력조회 규정을 함께 두고 있다는 점,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 근거를 명시하여 범죄

전력확인 절차의 실무적 한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¹¹⁵⁾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되며, 특히 아동복지시설은 평소 아동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주된 기관들로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결격사유 점검을 통해 종사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유사입법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소속 활동지원인력이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아이돌보미 지원법」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경비업법」 제17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생략) ② 경비업자는 선출·선임·채용 또는 배치하려는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 출장소 또는 배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115)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는 수사, 재판, 공무원의 임용 등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제10호를 적용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음.

- 정례적 점검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중인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사생활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아동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근무제한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과 비교형량 하여 현저히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두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이미 채용되어 근무중인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려는 것으로, 조희 결과 범죄행위가 나타났을 때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그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2. 아동복지시설 평가근거 마련 등(제12060호 강선우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의 안전과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 환경 및 종사자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심리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55조의2(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심리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리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리지원의 대상·방법 등 심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55조의3(아동복지시설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안전과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 등의 환경, 운영 과정,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

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 등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아동복지시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2.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5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제61조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가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보건복지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실

	이하 제1항의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방법, 확인점검의 대상 및 방법, 그에 따른 평가등급 결정·조정, 평가결과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나. 보건복지부 의견

□ (평가근거 마련)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이미 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아동복지시설 평가 의무화에 대한 강조차원에서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¹¹⁶⁾와 유사하게 규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심리지원 근거 마련) 종사자의 업무로 인한 심리정 안정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심리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 공감함.

116)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이하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평가로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②~⑥ 생략

다. 검토의견

- 아동복지시설은 가정에서 양육, 보호, 교육 등을 할 수 없는 아동에게 가정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로서, 이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이 포함됨.

< 아동복지시설 현황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 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최근 아동복지시설 내에서의 아동학대 사례발생 증가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인권 보호현황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바 있음. 해당 결과, 시설 내 아동학대 및 아동의 건강관리와 종사자 교육 등의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정기적인 시설점검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 아동복지시설 점검 실시 개요 >

1 | 점검 개요

- (배경) '20년 경남 창녕(5.29) 및 충남 천안(6.1)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북 포항의 아동복지 시설(생활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
-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인권 및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추진('20.7~12월)
- (점검대상) 전국 아동복지시설 778개소에서 보호 중인 거주 아동 약 13천명

<인권 및 운영실태 점검 현황>

구분	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
개소	778	246	512	12	8
인원	13,094	9,749	2,672	461	212

☐ (점검기간) : '20.7.8.~12. (약 5개월)

☐ (점검반) 시·도, 시·군·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1,280명이 합동 점검

구분	계	공무원	아보전
점검반	1,280	331	949

☐ (주요 점검사항) 아동 및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여부, 종사자의 학대, 약물복용·관리, 아동의 건강관리 등 총 12개 항목 조사

2 | 점검결과

☐ 전국 아동복지시설 778개소를 점검한 결과 143개 시설, 300건 지적

- 약물관리 및 약물 복용 일지 작성 등 즉시개선 118개 시설, 210건
- 아동학대(일반사례) 등 행정처분 8개 시설, 23건
- 아동학대의심 사례로 수사의뢰 30개 시설, 67건

☐ 조치사항

- 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자발적 노력 장려 유관단체 협조요청
- 정기적인 인권실태 점검을 위한 지침 보완·시행 ('21.7월)
-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에 대한 양육상황점검 및 관리(분기별, 지자체)

☐ 개정안은 이와 같은 전수조사 실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주기적인 시설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다수의 아동복지시설이 지역·시설간 차이 없이 효과적인 아동보호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이러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공백 없는 보호·관찰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이 법에 따른 시설평가를 3년마다 받고 있어 이와 중복될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시설에 한정하여 별도의 평가를 실시할 경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서 형평성 논란의 여지도 있다는 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는 시설 간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고, 종사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효과적인 아동보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이와 관련해서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의의를 강조하기 위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¹¹⁷⁾와 유사하게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평가로 평가를 갈음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2021년 실시 기준) >

-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3년마다 시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 (평가예산) 1,233백만원('21년)
- (추진경과) 법적근거 마련('98.7월), 1~2기 평가(보사연, '99~'03년), 3~6기 평가(한국사회복지협의회, '04~'16년), 7기~8기 평가(한국사회보장정보원, '17년~)
- (대상시설 및 평가주기) 16개 유형 약 4,537개 시설을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3년 주기로 평가('99년~)

117)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이하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평가로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②~⑥ 생략

< 사회복지시설 그룹별 평가 주기 >

사회복지시설 유형	5기('11~'13)	6기('14~'16)	7기('17~'19)	8기('20~'22)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아동·장애인·정신재활그룹홈	411개 ('11년)	498개 ('14년)	660개 ('17년)	1,824개* ('20년)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그룹홈	765개 ('12년)	839개 ('15년)	938개 ('18년)	1,140개 ('21년)
아동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및 단기거주시설	1,014개 ('13년)	1,881개 ('16년)	1,573개 ('19년)	약 1,573개 ('22년)
소계	2,190개	3,218개	3,171개	약 4,537개

* 서울,경기도 자체평가시설 포함

** 아동그룹홈 평가를 사회복지시설 평가로 통합하여 실시, 아동 및 장애인그룹홈 평가를 '19년 → '20년으로 변경

○ **(평가항목)** 규모별·유형별 4~6개 영역*으로 구분, 20~40개 내외 지표로 구성

* ①시설·환경, ②재정·조직, ③프로그램·서비스, ④이용자의 권리, ⑤지역사회 관계, ⑥시설운영 전반

○ **(추진절차)** 지표개발→자체평가→현장평가→이의신청→확인평가→결과공개

○ **(결과활용)** 평가결과 상위시설 및 개선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1회), 평가결과 미흡시설(D, F등급)에 대한 품질관리 컨설팅 지원(1년)

23.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 실시(제12061호 강선우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 및 사업을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며, 교과용도서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인식개선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41조의2(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u>폐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나.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의견

-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및 종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인식개선 프로그램 보급 및 교과용도서 제작 등의 사업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은 세대의 청년층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또 다른 낙인이 될 수 있는 점, 인식개선을 위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홍보·캠페인 사업이 정부·민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 자립하는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교육과정에서 차별예방, 인권 및 다양성의 존중 등을 반영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 교육 여건을 가진 모든 학교에 인식개선교육을 의무로 부과하는 규정은 관련 교육을 기실시하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검토의견

- 보호종료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보호대상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를 받아오다 시설폐소하거나 보호종료된 아동을 말하는데,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2,500여명의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진출하고 있음.

< 연도별 보호종료아동 현황 >

연 도	합 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2020년	2,368명	827명	168명	1,373명
2019년	2,587명	992명	172명	1,423명
2018년	2,606명	1,065명	192명	1,349명
2017년	2,593명	1,034명	153명	1,406명
2016년	2,703명	1,042명	139명	1,522명

* 자료: 보건복지부(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

- 보호종료아동을 향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사회적 편견으로 학교나 일터에서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행동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이들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음.

특히, 각종 미디어매체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이 범죄를 저지르는 인물로 등장하거나 동정의 대상으로 비춰지기도 하며, 어린시절 보육원에 산다는 이유로 놀림을 당하거나 물건이 없어졌을 때 의심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등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잘못된 인

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있음.

- 보호종료아동 본인이 직접적으로 겪는 경제적·심리적 문제 등 외에도 이와 같이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사회적 편견에 대한 경험은 보호종료아동이 본인의 삶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이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자립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음.
- 이와 같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인식개선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고, 민간에서는 사회공헌적 성격으로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공적 개입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은 부족했던 게 현실이었음.

< 정부와 민간에서 실시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예시) >

○ 정부

- (바람개비서포터즈) 자립을 준비하고 있거나, 자립에 성공한 당사자들이 모인 조직으로, 보호아동 방문 자립교육, 멘토링, 자립지원 제도 홍보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긍정적 인식 부여
- (홍보) 복지부 유튜브(뷰피플, 동이공감 등), 아동권리보장원 홍보매체(유튜브, 아름다운재단 협업) 등을 통해 당사자 인터뷰 또는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청년계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민간

- (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인을 통해 당사자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한 인식개선 콘텐츠 생산(유튜브 영상, 디자인 제작 등), 언론 인터뷰 및 정책 간담회 등의 정책 활동에 참여
- (아이들과미래재단) 대학생, 보호종료아동이 함께 참여한 ‘소녀교육 서포터즈’를 통해 인식 개선 콘텐츠 생산

- 이에 개정안은 보호종료아동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인식개선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편견 없는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이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바,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 다만, 과도한 인식개선 홍보 등은 일상에 적응하여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에게는 또 다른 차별이라는 인식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그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식개선은 교육·홍보 주체의 의지와 전문성뿐만 아니라 이의 수용자인 국민의 능동적 참여가 중요하므로, 다양한 자발적 참여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교과용도서·에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하려는 안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¹¹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 법령으로 개별 사안의 교육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118)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로서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⑨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교과용도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장애인 복지향상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⑪ 제1항 및 제9항의 사업, 인식개선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및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 단축(제12338호 유의동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아동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 -----2년----- -----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보건복지부 의견

-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하면 더욱 시의성 있는 통계를 반영하여 아동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이나, 실태조사 실시 및 그 결과를 토대로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주기에 대한 고려 및 목적이 유사한 실태조사의 주기가 모두 3년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검토의견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연령대 별 발달상황과 아동이 처한 환경에 대한 아동종합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함)를 실시하여야 함¹¹⁹⁾. 그동안 실태조사는 총 3차례 실시되었으며, 해당 결과는 정책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음.

<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개요 >

- (목적)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토대로,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아동정책 수립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조사영역) 건강, 발달 및 교육, 관계, 양육 및 돌봄, 여가 및 활동, 안전 및 위험행동, 지역사회 환경, 물질적 환경, 주관적 웰빙 등 9개 영역 조사
- (조사방법) 5년 단위로 실시하며, 전국 만18세 미만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가구방문 조사
- (소요기간) 약 10개월(‘18년 실태조사 기준)
 - * 통계설계, 조사, 통계처리 및 분석 등
- (소요예산) 3.5억(‘18년 실태조사 기준)

119) 「아동복지법」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은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으로, 아동이 처한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이를 급변하는 아동정책 등에 대한 보다 시의성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다만, 현 실태조사는 정책마련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것으로서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주기와 일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¹²⁰⁾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보완한 임시조사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임시조사를 활성화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20)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아동 및 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아동종합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아동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득·재산 등 경제 상태 및 가구 구성 등 아동의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아동의 언어·인지·정서·사회적 발달에 관한 사항
3. 아동 양육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4.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5. 아동안전, 아동학대, 빈곤아동 등 아동의 권리 및 인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책수요 등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빈곤아동 등 특정 영역 또는 계층에 대한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25.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처벌수준 상향 (제12377호 이원욱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중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수준을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1의2. (생략) <u><신설></u>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4. (생략) ②·③ (생략)	제71조(벌칙) ① ----- ----- -. 1. 1의2. (현행과 같음) <u>1의3. 제3호(상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2. <u>제3호(상해는 제외한다)</u> ----- ----- -----. 3.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나. 보건복지부 의견

-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경우에도 상해에 해당하는 때에는 처벌 수위를 상향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에 공감함.

다. 검토의견

- 반인륜적인 아동학대 사건 발생 증가를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개정안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정함)의 처벌 상한을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법감정에 상응하고,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특히, 유사입법례로서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에서는 각각 장애인과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처벌 상한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두고 있어, 아동의 경우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① 사 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 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 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 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 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① --- ----- <u>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성 폭력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u> ----- ----- ----- ----- ----- ----- -----. 이 경우 피해 아동이 「초· <u>중등교육법</u>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 관할 시·도 교육감 및 소속 <u>학교장에게도 통보</u>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	② ----- ----- -----

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이 경우 피해 아동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 관할 시·도 교육감 및 소속 학교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시·도 교육감 및 소속 학교장-- ----- -----.
--	--

나. 보건복지부 의견

- ☐ 교육기관에서 아동을 면밀히 관찰하여 학대를 조기발견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사건이 교육기관에도 통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에 공감하나, 교육부·경찰청 등 유관 부처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다. 검토의견

- ☐ 정부는 아동학대·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 등 유관 기관 간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의 정보공유는 제한적이어서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¹²¹⁾.

121) 2020년 발생한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학대 피해사실 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학교에서는 해당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으며, 2021.5월 청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사망사건(‘극단적 선택’ 청주 여중생 2명...”성범죄·아동학대 피해자”, MBN, 2021.5.14.)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이 사망 전까지 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

- 「아동복지법」 제27조의2¹²²⁾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¹²³⁾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¹²⁴⁾.
- 개정안은 아동학대(성폭력 사건 포함) 사건의 피해자가 초·중·고 등의 학생일 경우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시·도 교육감 및 해당 학교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학생에 대한 교육기관의 보호·지원 조치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교육기관은 평소 아동이 활동하는 주된 공간들로서 아동학대 관련 정보는 아동학대·재학대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는 점,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교육기관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서는 교육기관이 사건을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

122) 「아동복지법」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3)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124) 현재는 경찰 측에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아 시스템에 관련 사실을 입력함으로써 통보를 갈음하고 있음.

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사실 통보의 내용과 절차, 통보된 사실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가. 개정안의 내용

- | 현행 | 개정안 |
|--|---|
|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

----- 이 때 그 대상이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제1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하여야 한다. |
|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신설> | 1. -----예방 |
| 2. ~ 5. (생략) | 1의2. 아동학대 예방
2. ~ 5. (현행과 같음) |

나. 정부부처 의견

□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교육 중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교육대상이 영유아인 경우 모든 아동 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외부전문가를 통해 교육하는 것은 전문 수행인력 확보, 소요재원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관계 기관간 충분한 협의를 추진할 예정임.

□ (교육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나, 유치원의 교원은 아동 발달 및 교육의 전문가인 점을 고려할 때, 유치원은 외부 전문가 또는 교원에 의한 교육이 상호보완적으로 병행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다. 검토의견

□ 「아동복지법」 제31조¹²⁵⁾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125)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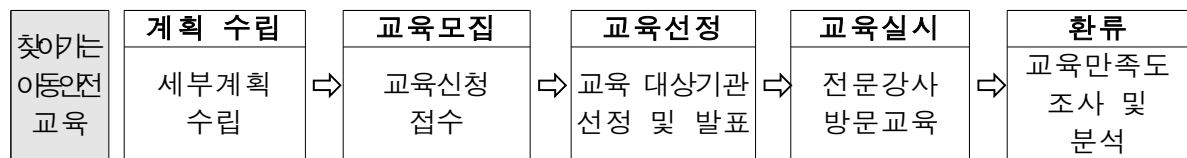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매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는 매년 1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개요 >

- (추진근거) 아동복지법상 31조에 따른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위·수탁 계약
 - * '17년 3월부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위탁
- (사업목적) 아동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동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아동안전교육을 통해 아동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 (사업대상) 영유아 및 아동(만 3세 ~ 5세), 종사자 등
 - * 영유아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우선 지원
- (사업내용) 아동안전교육 콘텐츠 개발과 함께, 아동안전교육 전문강사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을 순회하며 교육 진행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대상으로 교육신청을 접수하여 진행
- (추진절차)



* 아동안전 5대 영역(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교육 내용 및 자료 보완 후 아동안전교육 전문강사에게 교육 및 시연 교육 실시 후 각 대상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방문하여 교육 실시

** 전문강사에게 교육자료(가정통신문, 교육계획안, 교육가이드, PPT, 영상 등) 제공

* 자료 : 보건복지부

□ 한편,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동 교육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내용을 보면, 미취학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아동의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음.

※ 별표6: 교육기준(제31조제1항 관련)		
구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주기(총 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교육 내용	초등학교 취학 전	<u>1. 내 몸의 소중함</u> <u>2. 내 몸의 정확한 명칭</u> <u>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u> <u>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u>
	초등학교	1. 성폭력을 포함한 아동학대 개념 2. 성폭력의 위험상황 3.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4. 나와 타인의 권리 인식
	중·고등학교	1. 학대 및 성폭력의 개념 2. 위험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예방법 3. 학대·성폭력 범죄 신고 요령 4. 나와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
교육방법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 개정안은 아동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서, 현행은 성폭력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각각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교육대상이 영유아일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교직원 등 학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영유아에 대한 교육실시 주체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영유아의 경우 의사표현이 서툴러 아동학대 발생사실이 은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 참고로,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대리양육자(부모와 친인척을 제외)에 의한 학대행위자 중에는 아동이 주로 활동하는 시설 관계자(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음.

< 아동학대 발생장소(2019) >

관계	건수	건수
부모 및 친인척	24,032	80.0
부모의 동거인	363	1.2
유치원교직원	155	0.5
초중고 직원	2,154	7.2
학원 종사자	320	1.1
보육교직원	1,384	4.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408	1.4
기타시설 종사자	63	0.2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87	0.3
위탁부모 등	52	0.2
기타(타인, 이웃 등)	1,027	3.3
총계	30,045	100

* 자료: 보건복지부(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 다만, 개정안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선, 성폭력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내용과 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개정하는 방법 외에도 시행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하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방법으로 개정의 취지를 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은 영유아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통한 주기적인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대상¹²⁶⁾이 상당하여 그 실시를 위해서는 재정여력, 교육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인력양성 등 충분한 준비와 인프라가 전제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¹²⁷⁾.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236	232	228	224	220	1,140	228

* 자료: 예산정책처

* 전부 집합교육 방식으로 연간 8시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임.

< 전국 어린이집 현황 및 아동수 >

지역	어린이집 수	정원	현원
전국	37,371	1,686,873	1,365,085

* 자료: 보건복지부

126) 어린이집 약 140만명, 유치원 약 60만명

127) 아울러, 이와 연계해서는 시설 미이용자 아동을 교육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 외에도 행정적 효율성과 해당 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경각심 제고 효과를 고려한다면, 시설 종사자 일부를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²⁸⁾.

128) 다만, 이 경우 개정안의 취지에 반하여 해당 시설 종사자를 교육실시 주체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28. 통합사례회의 구성(제12527호 임호선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사례회의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1조(벌칙)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의3. (생 략) <u><신 설></u> 3. ~ 7. (생 략)	제22조의6(통합사례회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현장조치 시 전문가 의견을 실시간으로 구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회의(이하 “통합사례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통합사례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통합사례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2의3. (현행과 같음) 2의4.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3. ~ 7. (현행과 같음)

나. 정부부처 의견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통합사례회의의 체계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 다만, 이는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신속한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한 실무적 성격의 회의체로, 통합사례회의의 구성·운영을 법령에 일괄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지침 교육, 현황 모니터링, 컨설팅 등을 통한 현장 활성화 지원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 설치 시 동 위원회의 기능, 목적 등을 고려하여 기존 유사 위원회와 통·폐합, 대체가능성 등의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다. 검토의견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실시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재학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 학대로 인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혔다가 사망한 사건과 온몸에 멍이 든 채로 발견된 아동학대 사건¹²⁹⁾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재학대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129) “‘공포의 7시간’ 여행용 가방에 갇혔던 9살 초등생 끝내 사망” SBS 뉴스, 2020.6.4.

“온몸 멍, 머리 핏자국…부모 학대에 도망 창녕 9살 아동, 주민이 구조”, 한겨레, 2020.6.8.

< 최근 6년 간 아동학대 관련 일반 통계 >

(단위: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
전체 신고건수	19,203	29,671	34,166	36,416	41,389	42,251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	16,651	25,878	30,923	33,532	38,380	30,905
최종 학대 판단건수	11,715	18,700	22,367	24,604	30,045	30,905
사망사건 발생건수	16	36	38	28	42	43

* 자료: 보건복지부(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 최근 5년간 재학대 건수 >

(단위: 건)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재학대 건수	1,591	2,160	2,543	3,431	3,671

* 자료: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피해아동은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되고, 장기적인 트라우마도 경험하지만,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사실이 은폐되기 쉬움.
- 따라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적개입과 함께 중앙·지방정부, 경찰, 의료기관, 관계전문가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아동학대 여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학대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면, 아동학대

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전문가와 관계자로 구성된 통합사례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양한 의견공유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판단 여부에 대한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체계를 두텁게 하며, 아동학대·재학대 예방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바,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통합사례회의 개요 >

1. 통합사례회의 운영목적

- 아동학대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현장조치 후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효과적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운영함

2. 통합사례회의 기능 및 주요역할

- 통합사례회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논의함
 -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 학대피해 의심사례 등에 관련된 사항
 - 피해아동 보호 등에 관련한 사항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 방향 등에 관련한 사항
 - 그 외 회의 참석자들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통합사례회의 설치 및 구성

- (설치주체) 시·군·구별로 설치(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없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
 - ※ 반드시 별도의 회의체를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회의체 통해 활용 가능함. 다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여러 시·군·구를 담당하는 경우, 시·군·구별로 설치할 필요 없음
- (구성)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필수로 하고, 의료·법률·복지·임상심리·학교 등 전문가 자문체계를 구축하여 사안에 따라 필요한 전문가 추가

- (전문가 자문체계) 조사 및 판단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상시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전담 의료인·법조인 등 자문체계를 반드시 구축

※ 현장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의료계, 법조계 등 전문가 단체와 협업 강화 및 전담의료기관 지정

4. 통합사례회의의 운영 절차

- 통합사례회의는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개입의 신속성 확보를 고려하여 현장조치 진행 여부에 따라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됨

1) 현장 판단이 어려워 현장조치 미실시한 경우 : 긴급 통합사례회의

- 회의 개최 요건
 - 응급조치, 즉각 분리에 이르지 않은 상황
 - 현장에서 비대면(유선 등)으로 의료적 소견 등 전문가 자문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상황(전문가가 피해아동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이 회의 개최를 요청
- (논의내용)
 - 피해아동의 신체적·심리적 상태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상태 확인 및 학대 개연성, 학대행위자 분리 등 피해아동 보호조치 방법에 대한 전문가 자문
- (회의방법) 회의는 신속하게 진행하며 회의결과는 비공개하고 서면으로 작성·공유
 - (회의자료)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판단 및 조사서, 전문가 소견서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시 피해아동 상태 및 보호조치 판단 자료 추가
 - (회의준비) 아동학대 사건에 따라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진행하고 전문가 섭외 및 피해아동 진료·검사 동행, 안건작성, 회의결과 작성 등 기관 간 협업
 - * 통합사례회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안건작성, 회의결과 작성
- (시간) 회의개최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 * 회의 요청(D), 피해아동 진료 및 검사 등(D+1~2일), 회의개최(D+3일)
- (장소) 회의실(대면) 또는 영상회의(비대면)
 - * 피해아동 진료 및 검사 소견서 외 전문가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의 개최

2) 즉각분리 등 현장조치 실시한 경우 : 일반 통합사례회의

- (요건)
 - 현장조치 이후 추가적 조치 또는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등에 있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이 회의 개최를 요청
- (논의내용) 피해아동의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아동의 건강, 심리상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향후 추가 조치사항* 등 논의
 - * 조치 지속 여부, 추가 필요조치, 사후관리 방안, 피해아동 지원방안 등
- (합동점검 필요 사례) 분리조치까지 필요 없지만 위험성을 보이는 신고 건은 주기적 합동점검 필요 사례*로 선정하여 지속 모니터링
 - * 반기별 합동점검 시 필수적으로 점검 추진
- (회의방법) 참석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준비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함. 비공개 원칙이며 회의결과 서면

으로 작성·공유

- (시간·장소) 피해아동의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의하여 시간·장소 선택

※ 통합사례회의는 제시된 요건에 따라 회의를 요청 및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어 현장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민원, 책임 면피 등의 사유로 회의를 운영하지 않도록 함

* 자료 : 보건복지부

- 다만, 실시간으로 전문가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부분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보건복지부는 통합사례회의의 구성·운영을 법령에 일괄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현황 모니터링, 컨설팅 등을 통한 현장 활성화 지원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설명하는바, 지역별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침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활용·운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9. 아동권리보장원 고유업무 범위 확대

(제12828호 김성주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입양특례법」 및 「국제입양법」에 따른 입양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업무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생략)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9. 「입양특례법」 및 「국제입양법」----- 입양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신설>	나. 양부모 및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신설>	다. 「입양특례법」 및 「국제입양법」에 따른 입양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신설>	라.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나. (생략)	마. (현행 나목과 같음)
다. 그 밖에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바. ----- 「입양특례법」 및 「국제입양법」----- -----

10. ~ 13. (생략)	10. ~ 13.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나. 보건복지부 의견

- (보건복지부) 입양 제도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입양업무를 실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맞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다. 검토의견

- 개정안은 공적 입양체계를 마련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27호) 및 「국제입양법안」(의안번호 제12826호)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당 법안의 논의 결과에 따라 그 업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498